

연구보고서  
2019-09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남재량 · 전영준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남재량) ..... 1
제2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	(남재량) ..... 3
제1절 들어가며 .....	3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현황 및 관련성 .....	6
1. 최저임금 .....	6
2. 근로장려금 .....	8
3.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실적 .....	11
4. 한국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	12
제3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특성 .....	14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분포 .....	14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 분포 .....	20
제4절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	24
1.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	24
2.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	28
3.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특성 .....	31
제5절 소 결 .....	34
제3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 및 정책과제 :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분석 .....	(전영준) ..... 36
제1절 들어가며 .....	36

제2절 모형	40
1. 가 계	41
2. 기 업	47
3. 정 부	48
4. 경쟁균형	49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52
1. 모형 캘리브레이션	52
2. 자원배분계산 알고리즘	56
제4절 결과분석	57
1. 기준경제	57
2. 최저임금의 효과	62
3. EITC의 효과	72
4.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작용	75
제5절 소 결	81
제4장 결 론	(남재량) 83
참고문헌	88
[부록 1] 부 표	90
[부록 2]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92
[부록 3] 고용상태 결정과정	95

## 표 목 차

<표 2-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실적 .....	11
<표 2-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성별 .....	15
<표 2- 3>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부양자녀 인원별 .....	17
<표 2- 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부양자녀 인원별 .....	17
<표 2- 5>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가구유형별 .....	18
<표 2- 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연령집단별 .....	19
<표 2- 7>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 성별 .....	20
<표 2- 8>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수급액: 부양자녀 인원별 .....	21
<표 2- 9>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수급액: 가구유형별 .....	22
<표 2-10>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수급액: 연령집단별 .....	23
<표 2-1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	25
<표 2-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가중치 적용 .....	26
<표 2-1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	26
<표 2-14>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	27
<표 2-15>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	27
<표 2-16>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	28
<표 2-17>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	30
<표 2-18> 모자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의 전체가구 수급금 대비 비율 .....	30
<표 2-19>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 분포 .....	32
<표 2-2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 분포 .....	33
<표 2-2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 가구주의 나이 .....	33
<표 2-2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구주의 나이 .....	34

<표 3-1> 소득계층별·연령별 구직률 및 이직률 .....	53
<표 3-2> 기초생보 및 EITC 관련 모수 .....	55
<표 3-3> 거시경제 변수(기준경제) .....	58
<표 3-4> 최저임금의 효과 1 .....	66
<표 3-5> 최저임금의 효과 2 .....	67
<표 3-6>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	73
<표 3-7>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1(고용률 변화) ...	76
<표 3-8>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2(고용률 변화) ...	76

## 그림목차

[그림 2-1]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	7
[그림 2-2]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3~2016년) .....	9
[그림 2-3]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7년) .....	9
[그림 2-4]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8년) .....	10
[그림 2-5]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9년) .....	10
[그림 2-6] 모자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비율 .....	29
[그림 3-1] 소득계층별·연령별 임금률 .....	53
[그림 3-2] (전체 인구의) 연령집단별 고용률 .....	54
[그림 3-3] 연령별·소득계층별 자원배분(기준경제) .....	59
[그림 3-4] 최저임금제에 의한 임금률 및 구직률 변화 .....	62
[그림 3-5] 최저임금제의 효과 1(고용률 변화) .....	68
[그림 3-6] 최저임금제의 효과 2(고용률 변화) .....	70
[그림 3-7] EITC의 효과(고용률 변화) .....	74
[그림 3-8] EITC와 최저임금제의 상호작용 1(고용률 변화) .....	77
[그림 3-9] EITC와 최저임금제의 상호작용 2(고용률 변화) .....	78





## 요 약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상호 작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책조합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동시 확대 실시의 효과를 현재로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 변화여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0대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대체하면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을 최저임금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두 제도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제도와 함께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률, 근로장려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실적 그리고 양자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실적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관련성에 대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결합 및 상호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실적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즉 노동공급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의 하락을 인상된 최저

임금이 막아준다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예컨대 10대 청소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은 다른 가구들의 수급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금 최저 수급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준도 다른 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았으며, 연령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3장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과 근로장려제도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제도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시도하였다. 최저임금제도와 EITC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Neumark and Wascher(2007)의 문헌조사에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Card and Krueger(1994)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관념과, 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 시장이라는 관념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이라는 추론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관련 연구 중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도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대일 외, 2016의 문헌조사 참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Neumark and Wascher (2011)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EITC에 초점을 두고 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급을 늘려 이들의 임금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대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러한 임금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공급 증가의 상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이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급을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이전에는 최저임금제와 EITC의 상호관련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적인 중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구집단별 근로참여에 대한 이질적인 성향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소비, 저축,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구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가구의 형태를 부부로 구성된 기혼가구와 독인가구(혹은

단독가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구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혼가구는 주소득자(주로 남성)와 보조소득자(주로 여성)로 구성되는데 보조소득자의 경우 여가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주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강하여 주소득자의 근로참여도가 보조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단독가구의 여가에 대한 선호는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참여가 필요하나, 기혼가구의 주소득자가 보조소득자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근로참여의 필요성이 덜한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근로참여의 필요성(혹은 여가에 대한 강도)과 관련된 이질성은 Neumark and Wascher(2011)가 기술한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참여의 필요성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EITC, 그리고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비숙련노동 실업자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부여받는 구직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모형과 한국 경제와 제도를 반영한 모수 설정을 한 후 시도한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GDP가 약 4% 하락하고, 자본축적도 대폭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GDP 비율이 3.6에서 3.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의 경제에 대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제도 수혜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유

발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 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가 충분히 작을 때에 노동공급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폭은 기혼가구의 경우 약 1.7%p(남성 3.0%p, 여성 0.5%p), 미혼가구의 경우 4.0%p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폭은 저소득층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 하위 20% 계층의 경우 16.2%p, 하위 20~40% 계층의 경우 5.9%p 고용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은 기초생보와 같은 복지급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저임금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대(60대) 여성 인력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여 증가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전일제 취업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줄일 뿐 아니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제 1 장

## 서 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에서 이루어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만약 두 제도가 상호 결합하거나 서로 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조합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어려운 것은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data)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동시 확대 실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너무나 큰 정책적 변화여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 시사점을 찾아보아야 한다.

비교적 최근에 Newmark and Wascher(2011)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함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10대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대체하면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을 최저임금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2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여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두 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2018년과 2019년이 아니더라도 시장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국경제가 경험하여 왔으며, 근로장려세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동시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한국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정책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들 두 정책의 결합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이로부터 관련 정책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겠다.

전자에 대한 분석은 제2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후자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 실시될 것이다. 제4장은 이상의 분석을 마무리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결론지을 것이다.

## 제 2 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 제1절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이를 법으로 강제한 이후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목적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주요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효시적 연구인 스티글러(Stigler, 1946) 역시 최저임금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극심한 빈곤의 퇴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46년에 스티글러(Stigl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은 생활을 함께 하는 가구나 가족을 단위로 하는 반면, 최저임금제는 가구가 아닌 개인을 단위로 한다. 따라서 가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빈곤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므로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빈곤 퇴치라는 목표와 개인 임금의 최저수준이라는 수단에 있

어 단위 불일치 문제는 많은 새로운 고민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고민들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다. 이 제도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부(負)의 소득세, 즉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세를 징수하듯이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음(-)의 소득세, 즉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음(-)의 소득세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험(experiment)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여전히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여 보장해 주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가 수혜자의 근로의욕과 자활의지를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음(-)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NIT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과 유사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음(-)의 소득세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고 이에 따라 탄생하게 된 것이 근로장려세제이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에 논의의 초점은 이 제도의 실제 성과에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이 제도의 근로유인 및 소득개선 효과를 분석한 바 있으며, 빈곤가구들의 근로를 통한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들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근로장려세제는 다른 나라들로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제도도 더욱 확대 실시되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에 비해서도 빈곤층의 소득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의 이러한 성과가 최저임금제라는 무딘 도구를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니었다. 최저임금제는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완만하고 제한적인 인상이 아니라 급격하고 대폭적인 인상은 명백히 고용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정치인과 일반 대중의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되어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한국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최근 들어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 간의 상대적 유효성의 차원이 아니라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정 계층에 있어서 더 높은 최저임금이 근로장려세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wmark and Wascher(2011)의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의 경우 고용에 있어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한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여성은 10대와 같은 비숙련노동을 대체하면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하락 압력을 최저임금 인상이 막아 이들 여성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한국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30%에 가까운 정도로 급격히 대폭 인상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용저해라는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의 대폭적인 확대와 수혜금액의 대폭 인상을 일자리안정자금과 함께 긴급히 처방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관계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연구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두 제도의 동시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두 제도의 확대 실시가 다행스럽게도 상호작용을 통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득 지원이긴요한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배우 여성 가구주 계층에 우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망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긴급히 실시된 정책들이니 만큼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제도의 동시적인 대폭 확대 실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은 이러한 바탕에서 먼저 확대 실시된 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을 제2절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3절은 두 제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기대될 수 있는 계층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자 집단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에 대해 국세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알아본다. 제4절은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주 계층에서 근로장려금의 성과가 다른 계층의 경우에 비해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제5절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현황 및 관련성

### 1.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당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그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표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sup>1)</sup>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sup>2)</sup> 이를 위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sup>3)4)</sup>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sup>5)</sup>

1) 한국노동연구원(2019), 『2019 KLI 노동통계』, p.88 ‘최저임금제에 관한 해설’ 참조.

2)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3)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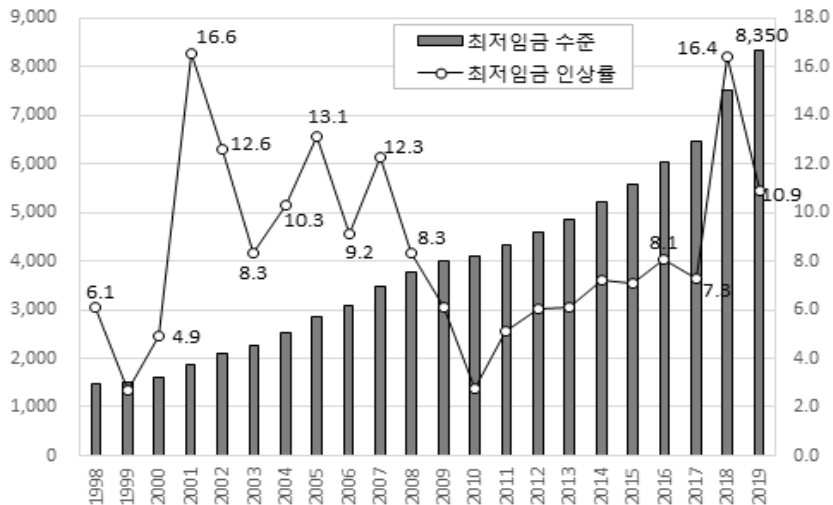
4)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그동안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은 [그림 2-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부록 1]의 <부표 2-1>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분석기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2001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16.6%로 매우 높았고 이듬해인 2002년에도 12.6%나 인상되었다. 2003년의 8.3%가 2008년의 경우와 함께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인상률에 해당할 정도이다.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7년의 인상률은 모두 10%를 넘는다.

2008년까지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후 200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2016년에도 최저임금은 8.1% 인상되었으며, 2017년에도 7.3%로 낮지 않다. 그러다가 2018년에 무려 16.4%라는 매우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1년의 16.6% 인상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그치지 않고

(그림 2-1)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의결경위』, 각 연도.

다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에도 10.9%가 더 인상되어 2019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높아졌다. 최근의 이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낳지 않을 수 없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과 자영업자의 폐업 그리고 물가 상승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 2. 근로장려금

최근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sup>6)</sup>의 신설을 통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저소득 근로자의 2008년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직전인 2008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확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렇게 설계된 제도가 2010년까지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자녀요건에 있어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를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까지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을 기존의 부양자녀 수 기준에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가구원 수가 한 명뿐인 단독가구와 두 명 이상인 가족가구로 구분하고 가족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가구의 경우 70만 원이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17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10만 원이었다. 이러한 최대 지원금은 [그림 2-3]에서 보듯이 2017년에 각각 77만 원, 185만 원,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에 최대 지원금액은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85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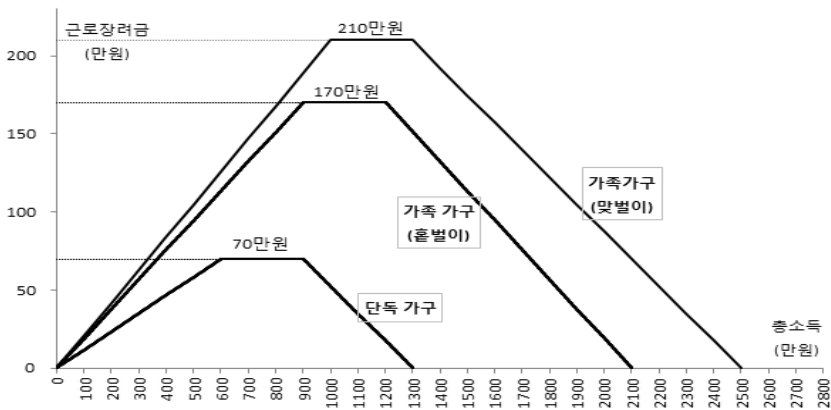
2019년의 근로장려세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요건 상한을 [그림 2-5]에서 보듯이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2006년 12월 30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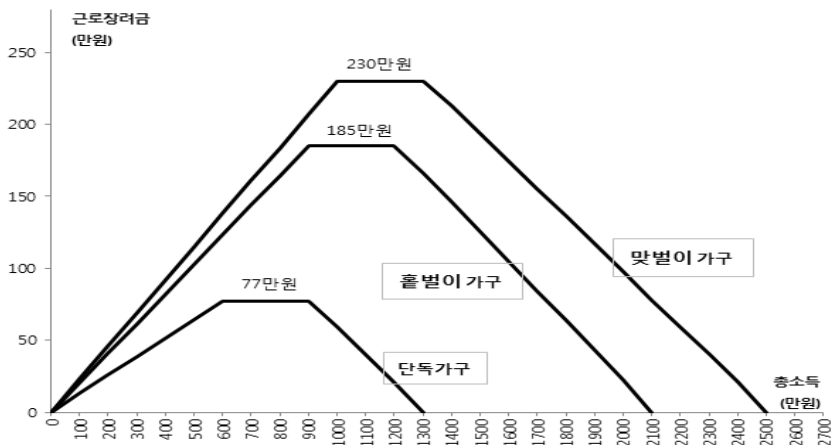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크게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지원대상의 확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대지금액 또한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지원대상 가구 수를 기존의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배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금액을 1.2조 원에서 3.8조 원으로 증액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소산이었다(표 2-1 참조).

[그림 2-2]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3~2016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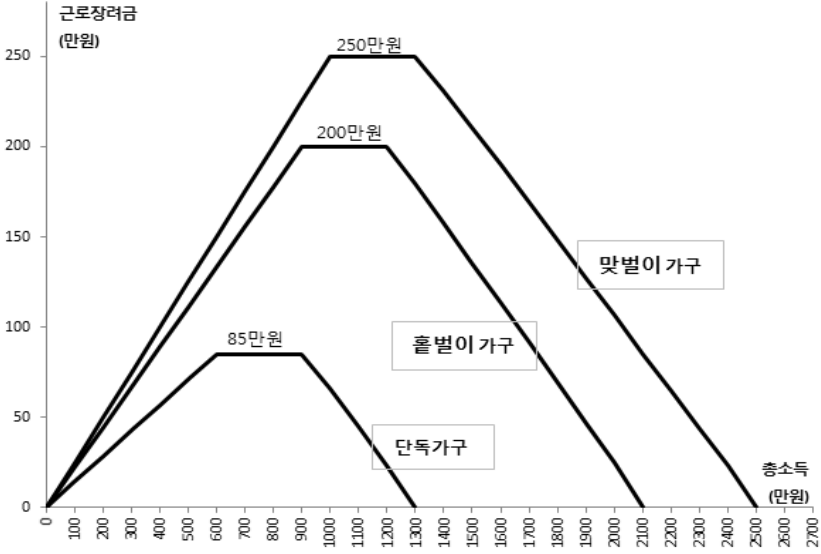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7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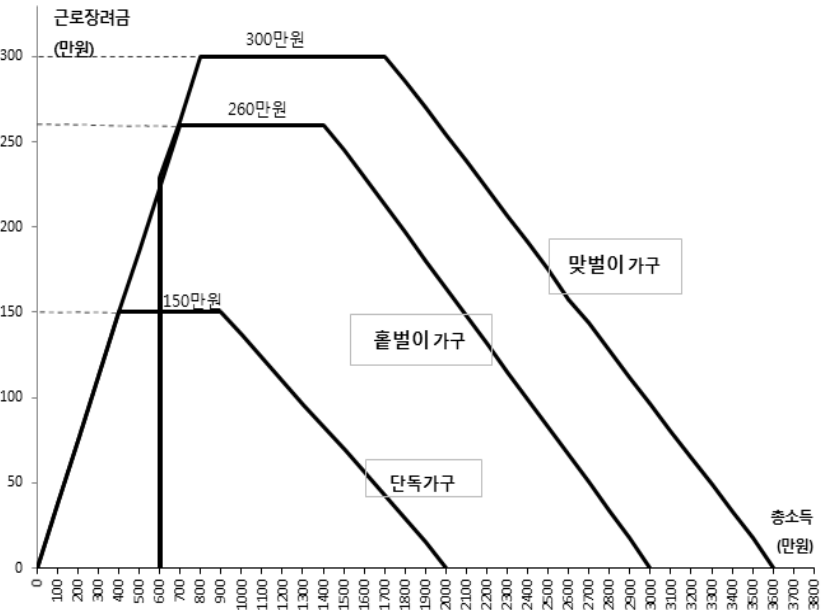
10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그림 2-4)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8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 한국의 근로장려세제(2019년)



자료: 저자 작성.

### 3.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실적

다음의 <표 2-1>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2008년 59.0만 가구에서 2017년 259.8만 가구에 이르러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려준다. 근로장려금에 국한해서 말하면 2017년 169.3만 가구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다. 2018년을 대상으로 2019년에 지급될 가구는 334.0만 가구(안)에 이르며 금액은 3조 8,228억 원(안)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의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114.5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실적

(단위: 가구, 백만 원, 천 원)

	전체합계 (1=2+3)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3)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금액 (가구당)	가구수	금액
2008	590,720	453,731	590,720	453,731	768	-	-
2009	566,080	436,903	566,080	436,903	772	-	-
2010	522,098	402,003	522,098	402,003	770	-	-
2011	752,049	614,021	752,049	614,021	816	-	-
2012	783,397	561,761	783,397	561,761	717	-	-
2013	846,018	774,492	846,018	774,492	915	-	-
2014	2,356,670	1,714,460	1,281,856	1,056,562	824	1,074,814	657,898
2015	2,383,006	1,627,420	1,439,146	1,057,397	735	943,860	570,023
2016	2,716,855	1,760,377	1,655,058	1,196,707	723	1,061,797	563,670
2017	2,598,550	1,753,739	1,693,612	1,280,821	756	904,938	472,918
2018 (안)	-	-	3,340,000	3,822,800	1,145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2018),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 7. 18.

#### 4. 한국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라는 두 제도는 빈곤의 완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제도의 설계 및 시행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및 공표를 통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법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임금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sup>7)</sup>를 신설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sup>8)</sup>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을 경우 규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sup>9)</sup>하고 이를 환급<sup>10)</sup>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형식을 빌어 저소득자 지원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피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두 제도는 각기 자신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별도의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각 제도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도 별도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들 둘 가운데 어떤 제도가 가난을 구제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18년의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16.4% 인상한 데에 이어 2019년에도 다시 10.9% 인상하여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하

7)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2006년 12월 30일 신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여 시간당 8,350원이 되었다. 여기에 주휴수당 20%를 가산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10,020원으로 1만 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실직과 자영업자의 폐업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2019년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실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높여 수급 가구 수를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1.01배 그리고 지원금액을 1조 1,967억 원에서 3조 8,228억 원으로 2.19배 확장하겠다는 안이 최종 확정되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sup>11)</sup>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더 급격한 확대 실시는 두 제도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만약 두 제도가 저소득자 지원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거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 제도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거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고려 또는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 남재량(2017)을 들 수 있다. 그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2010년) 조사부터 17차(2014년) 조사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14.6%인 반면, 그 반대인 경우, 즉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1.1%에 불과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대신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어도, 최저임금을 높여 근로장려금 지급의 효과를 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을 시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11) 기획재정부(2018),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 7. 18.

### 제3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특성

이제 실제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과 수급액 등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아보자. 자녀장려금제도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에서 보았듯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임금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를 이어 왔으며, 최대 지원금액 역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자녀 무배우 여성과 관련성이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특징을 살피는 것은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분포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를 사용하면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들의 특성과 수급금액 상의 특성 등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가구 수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표 2-1>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표 2-2>는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하에서 제시하는 표들은 장려금이 실제 지급된 연도가 아니라 장려금이 지급 대상으로 하는 연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표에 제시된 2008년의 장려금 지급 실적은 2008년에 지급된 장려금이 아니라 2008년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08년의 근로와 경제활동 및 자격요건들을 바탕으로 신청을 받아 적격자에 한해 2009년에 지급한 것이다.

〈표 2-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 성별

(단위: 가구, %)

	총 가구수	성별		성별		전 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8	590,720	358,932	231,788	60.8	39.2	100.0
2009	566,080	333,059	233,021	58.8	41.2	100.0
2010	522,098	298,367	223,731	57.1	42.9	100.0
2011	752,049	427,746	324,303	56.9	43.1	100.0
2012	783,397	387,578	395,819	49.5	50.5	100.0
2013	846,018	413,422	432,596	48.9	51.1	100.0
2014	1,232,546	605,919	626,627	49.2	50.8	100.0
2015	1,378,953	661,387	717,566	48.0	52.0	100.0
2016	1,570,442	744,831	825,611	47.4	52.6	100.0
2017	1,693,612	811,902	881,710	47.9	52.1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08년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수는 59만 가구를 넘고 있는데, 남성이 60.8%로서 여성 39.2%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2011년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75.2만 가구로서 전년도에 비해 23만 가구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부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가구, 즉 무자녀 유배우가구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사업자, 즉 보험모집원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성별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비율이 43.1%에 달하여 2008년의 39.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2014년에 123.2만 가구로 전년도에 84.6만 가구에 비해 38.6만 가구나 증가하였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2014년을 대상으로 2015년 신청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84.6만 가구 역시 전년도에 78.3만 가구에 비해 6.3만 가구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제도 개편과 관련이 클 것이다. 즉 2013년을 대상으로 2014년 신청분부터 새로 적용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화와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지급기준을 기존의 자녀 수 기준에서 가구원 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가구원 수가 1인인 단독가구와 2인 이상인 가족가구로 구분하고 가족가구를 다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졌다.

한편 6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서도 2012년을 대상으로 2013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당시의 장려금 지급 가구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2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장려금 수급자에서 여성 비율이 50.5%를 기록하여 남성의 경우를 능가하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급자 비율 증가 추세는 이후에도 관찰되고 있다. 2017년을 대상으로 2018년에 지급한 장려금 수급자에 이르면 여성 가구의 수가 88.1만 가구로 남성의 81.1만 가구보다 7.0만 가구가량 더 많게 된다. 이러한 여성 수급자의 증가 추세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게끔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를 부양자녀 인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 2-3>과 <표 2-4>는 부양자녀 인원별 장려금 수급 가구의 수와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양자녀가 1인 이상인 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2008년을 대상으로 한 연도에서 45.3만 가구였으며, 이후 감소하다 2011년 대상 연도에서 51.3만 가구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한다. 2014년 대상 연도에서 54.7만 가구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이와 달리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수는 2011년에 10.0만 가구에서 2017년 84.9만 가구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양자녀 없음의 비율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2017년에 이 비율은 75.7%로 매우 높다.



〈표 2-3〉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 부양자녀 인원별

(단위: 가구, %)

	없음	1명 이상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 체
2008	0	453,731	206,174	209,495	35,179	2,883	453,731
2009	0	436,903	206,236	194,877	33,019	2,771	436,903
2010	0	402,003	196,789	171,836	30,635	2,743	402,003
2011	100,957	513,064	195,190	248,449	63,815	5,610	614,021
2012	130,445	431,316	167,795	198,628	57,112	7,781	561,761
2013	349,086	425,406	206,608	163,285	48,453	7,060	774,492
2014	473,911	547,771	283,257	212,142	45,789	6,583	1,021,682
2015	539,581	488,468	263,937	179,184	39,388	5,959	1,028,049
2016	679,165	462,441	259,468	161,297	35,932	5,744	1,141,606
2017	849,337	431,484	247,598	145,558	32,869	5,459	1,280,821

주: '전체'에 나타난 수치는 총 수급가구 수로서, <표 2-1>에 제시한 총 수급가구 수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자료집계 시점의 차이에 기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2-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 부양자녀 인원별

(단위: 가구, %)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2008	0.0	45.5	46.0	7.8	0.6	0.1	100.0
2009	0.0	47.2	44.5	7.6	0.6	0.1	100.0
2010	0.0	49.1	42.6	7.6	0.6	0.1	100.0
2011	31.7	28.7	31.9	7.1	0.6	0.1	100.0
2012	44.4	24.2	24.5	6.0	0.7	0.1	100.0
2013	52.6	23.8	18.5	4.5	0.6	0.1	100.0
2014	52.6	24.5	18.4	3.9	0.5	0.1	100.0
2015	61.8	20.6	14.0	3.1	0.4	0.1	100.0
2016	69.8	17.0	10.6	2.3	0.3	0.1	100.0
2017	75.7	13.9	8.3	1.8	0.2	0.1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특히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에 대한 정보이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는 이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가 더 이상의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 수의 증가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부양자녀가 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및 그 비중의 증가는 가구원이 1명뿐인 단독가구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2-5>는 가구유형별로 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을 보여준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표에서 ‘단독가구’라 함은 2012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동안은 부부가구가 아닌 가구, 즉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말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가족가구/부부가구’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즉 부부가구를 의미한다. 반면 2013년 이후의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1명뿐인 가구를 말하며, ‘가족가구/부부가구’란 ‘가족가구’로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표 2-5>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 가구유형별

(단위:%)

	단독가구			가족가구/부부가구			전 체
	계	유자녀	무자녀	계	홀벌이	맞벌이	
2008	22.9	-	-	77.1	-	-	100.0
2009	24.0	-	-	76.0	-	-	100.0
2010	26.2	-	-	73.8	-	-	100.0
2011	13.5	-	-	86.5	-	-	100.0
2012	34.3	16.1	18.2	65.7	-	-	100.0
2013	16.9	-	-	83.1	74.1	9.0	100.0
2014	15.8	-	-	84.2	72.0	12.2	100.0
2015	30.3	-	-	69.7	60.1	9.6	100.0
2016	41.2	-	-	58.8	51.3	7.5	100.0
2017	47.0	-	-	53.0	47.0	6.0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이 표에서 보듯이 단독가구의 비율은 2013년 16.9%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7년에 무려 47.0%로 높아졌다. 이와 반대로 가족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3.1%에서 53.0%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맞벌이의 비율은 6.0%로서 홀벌이 47.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유자녀 무배우자 가구, 즉 유자녀 단독가구의 비율이 16.1%로 높다. 유자녀 무배우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을 2012년을 대상 연도로 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최종 집계된 가구 수인 783,397가구(표 2-1)에 적용하면 12.6만 가구에 해당한다. 적지 않은 수의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가 근로장려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받는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 수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 간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으나, 더 이상의 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이제 연령집단별로 구분한 장려금 수급 가구를 살펴보자. <표 2-6>은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표 2-6>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비율 : 연령집단별

(단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	전 체
2008	7.4	41.2	44.0	6.9	0.5	-	100.0
2009	7.1	39.4	44.8	8.1	0.7	-	100.0
2010	6.6	37.8	45.7	9.2	0.7	-	100.0
2011	4.4	26.9	36.1	20.1	9.2	3.3	100.0
2012	3.1	19.5	29.6	16.1	18.5	13.2	100.0
2013	2.8	16.2	27.2	19.6	20.2	14.0	100.0
2014	2.7	16.0	27.2	20.0	20.2	13.8	100.0
2015	2.2	12.2	21.7	31.7	19.4	12.8	100.0
2016	1.7	9.3	27.4	28.8	18.8	14.1	100.0
2017	1.8	16.5	23.6	25.6	17.7	14.8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가운데 20대 이하 연령집단의 비율은 2008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7.4%에서 1.8%로 하락하였다. 30대와 40대의 경우도 각각 41.2%에서 16.5%로 그리고 44.0%에서 23.6%로 감소하였다. 반면 50대의 비율은 동일 기간 동안 6.9%에서 25.6%로 상승하였는데, 2015년 31.7%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소 낮아졌다.

아울러 60세 이상 연령의 1인 가구도 2012년을 대상연도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60대와 70대 이상의 비율이 2012년 들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즉 40대 이하 연령집단들의 비중 감소와 50대 이상 연령집단의 비중 증가가 관찰되며, 이는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 분포

이제 근로·자녀장려금의 수급액을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로 수급액을 구분하여 <표 2-7>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8년을 대상연도로 하여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총 4,537

<표 2-7>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 : 성별

(단위: 백만 원, 만 원)

	총액	성별 총액		가구당	성별 가구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8	453,731	281,220	172,511	76.8	78.3	74.4
2009	436,903	261,800	175,103	77.2	78.6	75.1
2010	402,003	234,134	167,869	77.0	78.5	75.0
2011	614,021	350,505	263,516	81.6	81.9	81.3
2012	561,761	295,628	266,133	71.7	76.3	67.2
2013	774,492	409,256	365,236	91.5	99.0	84.4
2014	1,021,682	536,819	484,863	82.9	88.6	77.4
2015	1,028,049	526,286	501,763	74.6	79.6	69.9
2016	1,141,606	578,546	563,060	72.7	77.7	68.2
2017	1,280,821	655,268	625,553	75.6	80.7	7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동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억 원이며,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1년에 6,14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1조 216억 원으로 그리고 2017년에 다시 1조 2,80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즉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앞에서 보았듯이 대상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지원금액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에서 보듯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지급된 장려금이 훨씬 많았으나, 이후 이러한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2017년에 이르면 양자의 차이는 크게 줄어든다.

이러한 지급액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당으로 나타내어 보면, 표에서 보듯이 가구당 지급액이 2008년 76.8만 원에서 2013년 91.5만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7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모습은 남성과 여성에서 공히 나타난다. 여성 가구당 지원금이 남성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데, 2017년의 경우 양자의 격차는 10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표 2-8>은 가구당 장려금 지급액을 부양자녀 인원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당 장려금 액수는 부양자녀가 있는 '1명 이상'의 경우에 비해 대부분의 연도에서 크게 미치지 못한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1년 이후 100만 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가구당 지원금액

<표 2-8>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수급액 : 부양자녀 인원별

(단위: 만 원)

	없음	1명 이상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2008	0	76.8	76.6	77.1	76.4	74.4	68.2
2009	0	77.2	77.1	77.4	76.5	75.3	76.4
2010	0	77.0	76.7	77.3	76.9	75.6	75.4
2011	42.3	99.9	90.5	103.6	119.8	116.7	118.8
2012	37.5	99.0	88.4	103.4	121.3	118.9	118.9
2013	78.5	106.0	102.8	104.4	126.8	124.9	122.6
2014	73.1	93.7	93.7	93.6	94.3	94.8	97.2
2015	63.3	92.8	92.7	92.6	93.6	96.1	95.5
2016	62.0	97.3	97.4	97.1	97.8	99.5	100.1
2017	66.3	104.7	104.8	104.1	105.2	106.5	109.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은 자녀 수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과 자녀장려금의 도입 등으로 인해 격차가 커졌다가 2014년 이후 이러한 격차는 다시 줄어든 상태이다.

가구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9>에서 보듯이 제도 도입 첫 3년 동안 부부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간에 가구당 지원금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 2년 동안 큰 변화를 거쳐 2013년부터 가구원이 1명뿐인 단독가구의 가구당 지원금은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가족가구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다. 가족가구 가운데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가구당 지원액이 크며 2017년의 경우 양자 간의 격차는 16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 분석에 있어 2012년을 대상으로 한 유자녀 무배우 가구, 즉 표에서 단독가구 가운데 유자녀의 경우에 주목해 보자. <표 2-9>에서 보듯이 가구주가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자녀 무배우 가구의 가구당 지원금액은 95.0만 원으로 무자녀 단독가구(33.6만 원)의 2.83배이며 61.4만 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유자녀 무배우(여성)가

<표 2-9>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수금액: 가구유형별

(단위: 만 원)

	단독가구			가족가구(부부가구)		
	계	유자녀	무자녀	계	홀벌이	맞벌이
2008	76.1	-	-	77.0	-	-
2009	76.7	-	-	77.3	-	-
2010	76.5	-	-	77.2	-	-
2011	101.4	-	-	78.6	-	-
2012	62.4 (268,637)	95.0 (126,172)	33.6 (142,465)	76.6 (514,760)	-	-
2013	33.8	-	-	103.3	101.4	118.7
2014	32.8	-	-	92.3	91.0	99.8
2015	37.1	-	-	90.8	89.5	99.5
2016	40.8	-	-	95.0	93.3	106.8
2017	45.7	-	-	102.1	100.3	116.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구에 대한 가구당 지원금은 2012년 부부가구의 가구당 지원금 76.6만 원보다도 24% 더 많다. 표에서 괄호 안의 값은 앞에서 본 바 있는 해당 가구의 수를 추정한 것이다. 12.6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95만 원의 금액은, 정책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제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가구당 지원금을 살펴보자. <표 2-10>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령집단별 가구당 지원금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는 30대와 40대의 가구당 지원금이 가장 크고 20대 이하가 그다음이며 50대 이상일수록 가구당 지원금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2년에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나 2013년 들면서 이러한 모습은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즉 50대와 그 이상 연령집단들에서 가구당 지원금이 크게 높아지며 20대 이하 연령집단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관찰된다. 2014년에도 유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2016년부터 20대 이하 연령층의 가구당 지원금이 가장 크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표 2-10>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수금액: 연령집단별

(단위: 만 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70대 이상
2008	76.1	77.0	76.7	77.3	74.7	-
2009	75.7	77.2	77.3	78.0	76.6	-
2010	75.0	77.3	76.9	77.6	75.8	-
2011	86.5	98.1	94.3	59.5	45.8	37.5
2012	88.3	99.4	94.9	62.0	42.6	27.2
2013	101.7	107.0	106.2	104.7	76.3	46.6
2014	93.4	93.0	94.1	95.3	72.3	44.6
2015	92.6	92.2	93.2	69.4	69.4	43.6
2016	97.7	96.6	78.4	71.5	72.3	45.8
2017	93.8	74.3	85.5	78.5	78.2	51.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제4절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우리는 제3절에서 국세청이 실제 지급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 간의 관련성 또는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적 증거나 단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가구의 특징들로부터 제도의 실제 운영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구유형별 분석을 통해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 대한 유의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제4절은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더욱 직접적인 증거나 단서를 찾고자 한다.

### 1.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조사 자료들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저소득층을 과다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분석에 필요한 정도의 관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도 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제3절의 행정통계에서 실시할 수 없었던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2-11>은 복지패널자료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의 수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도 각 연도 표시는 정책당국이 근로를 장려하고자 의도한 연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이 표에서 2008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가 108가구인데, 이는 2008년의 근로 및 경제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2009년에 신청하여 수급한 가구의



수인데, 복지패널은 이를 2010년의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본고는 이를 2008년의 수급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6년의 근로장려금 수급 232가구가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은 2017년이며, 2018년에 이에 대해 조사한다. 이 자료는 2019년에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 수는 2009년의 79가구부터 2016년의 232가구까지 분포되어 있다. 자녀장려금만 수급한 가구의 수도 1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한 가구도 100가구를 상회한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의 총수는 2009년의 79가구에서 2016년의 457가구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수급 가구의 비율은 2010년의 1.2%에서 2016년의 7.1%에 이른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수급 가구 수는 <표 2-12>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수급 가구 수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2008년의 28.0만 가구에서 2016년의 137.6만 가구에 걸쳐 있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패널조사에 포착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의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부터 크게 높아져 실제 실적에 근접하고 있다.

<표 2-1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단위: 가구,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수	총가구수	수급 비율
2008	108	-	-	108	6,034	1.8
2009	79	-	-	79	5,735	1.4
2010	90	-	-	90	7,532	1.2
2011	129	-	-	129	7,312	1.8
2012	90	-	-	90	7,048	1.3
2013	151	-	-	151	6,914	2.2
2014	120	121	110	351	6,723	5.2
2015	188	104	106	398	6,581	6.0
2016	232	113	112	457	6,474	7.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 : 기중치 적용

(단위: 천 가구,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자 녀 장려금	수급 가구수	수급 가구수 (국세청)	총 가구수	수급 비율
2008	280	-	-	280	591	16,917	1.7
2009	234	-	-	234	566	17,152	1.4
2010	210	-	-	210	522	17,951	1.2
2011	299	-	-	299	752	17,951	1.7
2012	210	-	-	210	783	18,206	1.2
2013	353	-	-	353	846	18,458	1.9
2014	300	314	306	920	1,233	18,705	4.9
2015	548	317	297	1,161	1,379	19,285	6.0
2016	674	391	310	1,376	1,570	19,524	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기중치 적용)	표준편차 (기중치 미적용)	최소값	최대값	가구 수	
					기중치 미적용	기중치 적용
2008	79.3	39.0	4	120	104	268
2009	83.8	39.8	2	144	78	232
2010	94.2	34.2	5	120	91	211
2011	83.8	46.7	6	200	129	299
2012	86.4	46.4	7	200	87	207
2013	98.3	50.6	10	200	151	353
2014	98.3	68.5	2	310	349	915
2015	88.5	68.5	2	320	398	1,161
2016	77.0	67.2	2	320	457	1,3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4〉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가중치 적용)	표준편차 (가중치 미적용)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2014	87.5	54.1	2	240	229	603
2015	74.4	50.4	2	210	294	845
2016	68.6	52.6	3	270	344	9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5〉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가중치 적용)	표준편차 (가중치 미적용)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2014	60.6	35.6	3	200	228	612
2015	65.1	36.4	5	200	210	614
2016	54.8	36.0	2	180	225	7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이제 수급한 장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표 2-13>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어느 한쪽이라도 수급한 가구와 둘 모두를 수급한 가구 모두에 대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2008년에 79.3만 원이었는데, 이는 국세청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의 76.8만 원(표 2-7)과 유사하다. 액수가 가장 적었던 경우는 2016년의 77.0만 원이며<sup>12)</sup>, 가장 많았던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의 98.3만 원이었다.<sup>13)</sup>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만 수급한 경우의 수급액은 각각 <표 2-14>와 <표 2-15>에 제시하였다. 근로장려금만 받은 경우 2016년의 가구당 수급액은 평균 68.6만 원에 그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54.8만 원에 그친다.

12) 2016년의 실적치(국세청)는 72.7만 원이다(표 2-7).

13) 2013년과 2014년의 실적치(국세청)는 91.5만 원과 82.9만 원이다.

## 2.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복지패널 자료상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므로, 이제 본 연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에 대해 알아보자. 복지패널 자료는 가구유형을 모자가구, 부자가구, 단독가구, 조손가구로 조사하고 나머지를 기타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모자가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표 2-16>은 이러한 가구유형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2008년의 2.1만 가구에서 2016년의 8.5만 가구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sup>14)</sup> 제도의 확대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이에 반응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표 2-16>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천 가구)

	모자		부자		단독	조손	기타	전 체
	가구	비율	가구	비율				
2008	21	8.0	9	3.5	7	0	231	268
2009	9	3.7	4	1.7	0	0	219	232
2010	18	8.3	4	1.8	0	0	190	211
2011	8	2.8	3	1.0	1	0	287	299
2012	22	10.8	0	0.0	14	0	170	207
2013	28	7.9	7	1.9	33	1	285	353
2014	72	7.9	22	2.4	22	4	795	915
2015	80	6.9	28	2.5	138	8	907	1,161
2016	85	6.2	25	1.8	216	3	1,048	1,376

주: 표에서 '조손'은 조손 또는 소년소녀가장인 가구를 말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14) 2012년 유자녀 단독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12.6만 가구(국세청)였는데, 복지패널 자료에서는 2.2만 가구에 불과하다.

[그림 2-6] 모자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6]은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비율을 보다 잘 보기 위해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흰 동그라미를 가진 검은 실선은 수급 비율을 나타내며 점선은 수급비율에 대한 선형 추세선이다. 추세선은 가파르지는 않지만 분명한 정(+)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모자가구의 장려금 수급비율이 상승추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모자가구의 장려금 수급 비율 상승추세는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결합에 따른 모자가구 노동공급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능가하고 있고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공급에 있어 양육(childcare)이라는 고정비용(fixed cost)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가구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결합된 근로장려금의 존재로 고정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2-17〉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구수 (가중치 적용)
2008	83.9	33	120	8	21,384
2009	77.4	24	120	4	8,662
2010	71.7	30	120	7	17,605
2011	164.0	70	194	4	8,223
2012	89.3	30	129	6	22,352
2013	130.2	86	170	9	27,965
2014	150.4	17	270	24	72,374
2015	122.9	30	270	25	79,621
2016	102.6	15	220	27	84,6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8〉 모자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의 전체가구 수급금 대비 비율

(단위: %)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구수 (가중치 적용)
2008	105.7	825.0	100.0	7.7	8.0
2009	92.4	1200.0	83.3	5.1	3.7
2010	76.1	600.0	100.0	7.7	8.3
2011	195.8	1,166.7	97.0	3.1	2.8
2012	103.3	428.6	64.5	6.9	10.8
2013	132.4	860.0	85.0	6.0	7.9
2014	153.1	850.0	87.1	6.9	7.9
2015	138.9	1,500.0	84.4	6.3	6.9
2016	133.3	750.0	68.8	5.9	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을 살펴보자.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녀장려세제로부터 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결합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7>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금액은 매우 높다. 2010년의 71.7만 원이 가장 작은 금액에 해당하고 2011년의 164.0만 원은 가장 큰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한 전체가구의 평균 수급금액을 대부분 크게 능가한다. 즉 <표 2-18>에서 보듯이 모자가구의 장려금 평균 수급금액은 전체가구의 경우에 비해,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100.0을 넘고 있으며 작게는 2012년의 103.3%에서부터 많게는 2011년의 195.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이 표에서 보듯이 모자가구 장려금 수급금액의 최소값이 전체가구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수급 장려금에 있어 전체가구 최소값 대비 모자가구 최소값 중 가장 낮은 것이 2012년의 428.6%이며 가장 높은 것은 2015년의 1,500.0%이다.

### 3.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특성

이제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자. 즉 모자가구의 가구주인 여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 가. 가구주의 교육수준

먼저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모자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모두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08년과 2009년의 전문대학이며, 2014년 이후는 대학교이다. 물론 2012년에 중학교의 비중이 14.1%로 높

게 나타난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준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주 전체의 교육수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후자의 교육수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고등학교의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12년 이후 초등 이하의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014년의 8.4%가 유일하며 중학교의 비중도 높다.

결국 모자가구의 여성 가구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예컨대 10대 청소년의 경우에 비해 모자가구 여성의 인적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노동공급 증가에 의한 임금의 하락을 최저임금이 막아준다면 고정비용이 존재하면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크기가 더 큰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결합된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예컨대 10대 청소년을 모자가구 여성이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 생산성이 더 높은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덜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표 2-19〉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대학원	전 체
2008	0	0	79.0	21.0	0	0	100.0
2009	0	0	48.5	51.5	0	0	100.0
2010	0	0	100.0	0	0	0	100.0
2011	0	0	100.0	0	0	0	100.0
2012	0	14.1	85.9	0	0	0	100.0
2013	0	8.5	84.7	6.8	0	0	100.0
2014	0	5.4	74.6	2.6	15.8	1.5	100.0
2015	0	6.3	78.4	3.0	11.2	1.1	100.0
2016	0	10.7	73.9	4.6	10.7	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0〉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 분포

(단위:%)

	초등 이하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대학원	전 체
2008	5.8	7.7	69.7	6.2	8.8	1.8	100.0
2009	4.5	6.9	60.0	15.1	11.8	1.6	100.0
2010	4.6	1.9	64.7	13.0	14.9	0.9	100.0
2011	5.2	9.3	61.3	12.3	10.6	1.3	100.0
2012	10.1	8.4	56.9	11.3	12.6	0.6	100.0
2013	18.1	10.7	47.1	10.3	13.3	0.4	100.0
2014	8.4	7.9	49.9	14.4	16.0	3.4	100.0
2015	15.2	10.8	48.9	10.7	11.2	3.2	100.0
2016	16.2	12.0	45.3	13.5	11.1	1.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나. 가구주의 나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 여성 가구주의 나이는 <표 2-21>에 제시하였는데, 이를 <표 2-22>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구주의 나이와 비교해 보자. 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평균 연령이 전체가구의 경우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나이의 최소값은 오히려 더 크고 최대

〈표 2-2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 가구주의 나이

(단위:세, 가구)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구수 (가중치 적용)
2008	38.0	30	43	8	21,384
2009	36.0	31	41	4	8,662
2010	38.2	35	42	7	17,605
2011	41.0	37	43	4	8,223
2012	40.9	36	46	6	22,352
2013	39.0	31	48	9	27,965
2014	41.9	32	53	24	72,374
2015	42.2	26	54	25	79,621
2016	44.5	29	56	27	84,6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구주의 나이

(단위: 세, 가구)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구수 (가중치 적용)
2008	41.8	25	80	104	268,243
2009	40.6	23	62	78	231,837
2010	41.9	28	74	91	211,322
2011	44.8	21	77	129	298,729
2012	45.4	29	73	87	206,789
2013	52.7	28	94	151	353,006
2014	48.1	22	83	349	914,981
2015	49.8	22	88	398	1,161,256
2016	51.7	22	87	457	1,375,7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값은 훨씬 더 낮다. 나이가 평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10대나 20대 초반처럼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50대에 이를 정도로 높지도 않은 연령은 노동시장에서 특별히 기피할 이유가 별로 없다.

## 제5절 소 결

우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두 제도와 함께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률 그리고 근로장려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실적 그리고 양자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실적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관련성에 대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결합 및 상호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실적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제도의 확대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노동공급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의 하락을 인상된 최저임금이 막아준다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예컨대 10대 청소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은 다른 가구들의 수급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금 최저 수급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매우 더 크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모자 가구 여성의 교육수준도 다른 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았으며 연령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제 3 장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 및 정책과제 :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한 분석

### 제1절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이들의 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노동시장 개입 정책이다. 최근 한국은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을 경험하고 있어 이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대폭 상회하여 각종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을 유발하며 또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불법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대일 외, 2016).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은 더욱 높아져(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수년 내 최저임금 수준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천명한 바 있어 향후 최저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최근 빠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의 고용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악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얼마나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

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정부와 학계가 공유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의 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를 강화한 바 있다.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였다. 수혜대상을 가족가구와 30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수혜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기준과 최대수급 가능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상향조정과 근로장려세제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제도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시도하였다. 최저임금제도와 EITC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Neumark and Wascher(2007)의 문헌조사에 매우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Card and Krueger(1994)를 비롯한 몇몇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관념과, 후자의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 시장이라는 관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비숙련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이라는 추론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관련 연구 중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도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최저임금제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대일 외, 2016의 문헌조사 참조).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Neumark and Wascher(2011)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EITC에 초점을 두고

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급을 늘려 이들의 임금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대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러한 임금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공급 증가의 상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이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급을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 이전에는 최저임금제와 EITC의 상호관련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적인 중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인 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구집단별 근로참여에 대한 이질적인 성향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소비, 저축,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구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가구의 형태를 부부로 구성된 기혼가구와 독인가구(혹은 단독가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구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혼가구에는 주소소득자(주로 남성)와 보조소득자(주로 여성)로 구성되는데, 보조소득자의 경우 여가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주소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강하여 주소소득자의 근로참여도가 보조소득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단독가구의 여가에 대한 선호는 기혼가구의 주소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참여가 필요하나, 기혼가구의 주소소득자가 보조소득자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근로참여의 필요성이 덜한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러한 근로참여의 필요

성(혹은 여가에 대한 강도)과 관련된 이질성은 Neumark and Wascher (2011)가 기술한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참여의 필요성의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EITC, 그리고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비숙련노동 실업자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부여받는 구직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모형과 한국 경제와 제도를 반영한 모수 설정을 한 후 시도한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률의 하락의 규모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의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최저임금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가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근로참여도가 낮은 기혼 여성 인력 등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신규노동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고용률 증가효과를 늘리지 못하며, 오히려 고용률 증가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하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시뮬레이션에 이용될 모형의 구조에 대해, 제3절에서는 모수설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절에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 제2절 모형

정책시뮬레이션에 이용될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다. 가계부문은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한 5개의 생애소득계층으로 구성된다. 생애소득 기준 소득계층이므로 생애기간동안 개인의 소득계층 간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아래 모형 설명 시 소득계층에 대한 첨자는 생략함). 각 소득계층의 가계는 기혼가구와 독인가구로 구성된다. 기혼가구는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인 배우자로 구성된다. 기혼가구는 가구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자의 생애기간동안의 노동과 소비(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독인가구는 자신의 노동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각 가구의 개인은 21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80세까지 생존하며 생애기간동안 사망위험에 직면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순수한 생애주기적 선호체계를 가지며 따라서 유산 상속동기가 없어 유산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들은 생애기간동안 실업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각 개인의 취업여부는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취업기회와 취업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업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각 가구의 취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취업여부와 함께 전일제(full-time) 취업을 할 것인지, 시간제(part-time)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다.

기업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returns-to-scale)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정부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minimum living standards security: MLSS),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최저임금제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제도를 유지한다. 가계와 기업은 완전경쟁적인 생산물시장과 생



산요소시장에서 생산물, 노동, 자본을 거래한다. 정부의 정책 중 최저임금제는 개인이 직면할 취업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을 상정한다. 본 모형에서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을 상정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였다.

## 1. 가 계

가계부문은 기혼가구와 미혼가구로 구성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기혼가구를 구성하는 부부의 나이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부부가 21세부터 80세인 기혼가구와 동일 연령대의 미혼가구(혹은 독신가구)가 공존하는 상황을 상정한다. 개인(혹은 가구)은 21세( $i=1$ )가 되면 노동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각 개인에게는 한 단위의 시간이 부여되는데 이 시간의 일부를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로와 여가에 배분한다.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취업기회는 확률적으로 주어진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fp$ 의 확률로 취업기회가 주어지며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sp$  확률로 정리해고를 당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매기 실업자와 취업자 중 각각  $fp$ 와  $1-sp$  비율의 사람이 취업기회를 가지며 이들은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미취업 중 선택을 하게 된다. 만일 전일제 근무를 선택하면  $ew\hat{h}_1(1-\tau_y-\tau_{UI})$ 의 세후 노동소득을 얻게 되며,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면  $ew\hat{h}_2(1-\tau_y-\tau_{UI})$ 을 얻게 된다.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 중  $1-fp$ 와 취업자 중  $sp$  비율의 사람들은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여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제주체들은 아래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유형 1( $\varepsilon=1$ ) :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고( $\eta=1$ ) 그리고 취업기회를 부여받은 사람( $S=e$ )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기의 노동시간( $\hat{h}_q$ )에 따라 2개의 소집단,  $q=1, 2$  (1: 전일제, 2: 시간제)로 다시 분류된다.
- 유형 2( $\varepsilon=2$ ) :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었고( $\eta=0$ ), 금기에 취업기회

가 부여된 사람들( $S=e$ )로 구성된다.

- 유형 3( $\varepsilon=3$ ):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eta=1$ ), 금기에 취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S=u$ )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기의 노동시간( $\hat{h}_q$ )에 따라 2개의 소집단,  $q=1, 2$ 로 다시 분류된다.
- 유형 4( $\varepsilon=4$ ):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었고( $\eta=0$ ), 금기에 취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S=u$ )로 구성된다.

두 사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기혼가구의 취업기회 부여는 위의 4개 유형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가구의 유형  $\epsilon_M = (\epsilon_P, \epsilon_S)$ 은 아래 16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begin{aligned} \epsilon_M = & (1,1), (1,2), (1,3), (1,4), \\ & (2,1), (2,2), (2,3), (2,4), \\ & (3,1), (3,2), (3,3), (3,4), \\ & (4,1), (4,2), (4,3), (4,4) \end{aligned}$$

각 개인과 가구의 비자산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실업급여, 기초소득 및 EITC 등 이전수입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실업급여는 단기실업자에게 지급된다. 단기실업자는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으나 금기에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기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중, 금기에도 취업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취업을 거부한 사람들( $\epsilon=1, \eta'=0$ )과 취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 $\epsilon=3$ )로 구성된다. 단기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 중, 취업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취업을 거부한 사람들( $\epsilon=2, \eta'=0$ )과 취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 $\epsilon=4$ )로서 2기간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실업급여( $W_{UI}$ ) 수준은 전기 노동소득의 일정부분(임금대체율,  $\zeta$ )으로 결정된다(식 1).

$$W_{UI}(q) = \zeta w e_{i-1} \hat{h}_q \tag{1}$$

기초생보급여( $W_{MLSS}$ )는 비자산소득( $y$ )과 보유자산( $k$ )이 일정수준( $W_{MLSS}^{\max}, k_{MLSS}^{\max}$ )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기초생보는 보충급여방식

으로 지급된다. 보충급여방식은 정부가 기초생계비( $W_{MLSS}^B$ )를 정하고 비자산소득이 기초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초생보는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식 2).

$$W_{MLSS} = W_{MLSS}^B - y \quad (2)$$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과 근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 EITC 급여는 수급대상자의 근로소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급여 산출을 위해 소득구간을 점증구간( $we\hat{h}_q < yc_1$ ), 평탄구간( $yc_1 \leq we\hat{h}_q < yc_2$ ), 점감구간( $we\hat{h}_q \geq yc_3$ ) 3개로 나눈다.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가 증가하고( $rc_1 > 0$ ), 평탄구간에서는 급여가 변화가 없고( $rc_2 = 0$ ), 점감구간에서는 급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rc_3 < 0$ ) 근로소득이  $yc_3$ 에 도달하면 EITC가 0이 된다.

$$EITC(we\hat{h}_q) = \begin{cases} rc_1 we\hat{h}_q & \text{if } we\hat{h}_q < yc_1 \\ rc_1 yc_1 + rc_2 (we\hat{h}_q - yc_1) & \text{if } yc_1 \leq we\hat{h}_q < yc_2 \\ rc_1 yc_1 + rc_2 yc_2 + rc_3 (we\hat{h}_q - yc_2) & \text{if } yc_2 \leq we\hat{h}_q < yc_3 \\ 0 & \text{if } we\hat{h}_q \geq yc_3 \end{cases} \quad (3)$$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특정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 $we$ )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수준( $\min W$ )으로 지급된다(식 4).

$$hw = \begin{cases} we & \text{if } we > \min W \\ \min W & \text{if } we \leq \min W \end{cases} \quad (4)$$

각 개인과 가구는 자신들이 직면한 제약조건하에서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식 5). 기혼가구의 효용함수( $u_M$ )는 가구전체의 소비( $c_M$ ), 주소득자 및 보조소득자의 여가( $l_{MP}, l_{MS}$ )의 함수로 표현되며, 독신가구의 효용함수( $u_S$ )는 자신의 소비( $c$ )와 여가( $l$ )의 함수로 표현되며 이 함수는 Cobb-Douglas 함수로 가정한다. 기혼가구의 효용함수( $u_M$ )에 가구소비( $c_M$ )를 반영함에 있어 가구 소비를 반으로 나누고 이에

1.5 제곱한 후 통상적인 Cobb-Douglas에 반영하였다. 이는 가구 소비를 반으로 나누어 이를 제공하여 효용함수에 반영하는 Cho and Rogerson (1988)의 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제공 대신 1.5제곱을 하여 효용함수에 반영한 이유는 미혼가구와 기혼가구 간 소비성향의 차이(2016년 현재 약 5.6%p)를 추정된 손희경(2017)의 추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begin{aligned} \max E_g \sum_{t=g+1}^{g+60} \beta^{t-g-1} u_M(c_M(k_M, \epsilon_M, t), l_{MP}(k_M, \epsilon_M, t), l_{MS}(k_M, \epsilon_M, t)) \\ \max E_g \sum_{t=g+1}^{g+60} \beta^{t-g-1} u_S(c(k, \epsilon, t), l(k, \epsilon, t)) \end{aligned} \quad (5)$$

$$u_M(c_M, l_{MP}, l_{MS}) = \frac{\left( (0.5 c_M)^{1.5\theta} (l_{MP}^\kappa l_{MS}^{1-\kappa})^{1-\theta} \right)^{1-\gamma}}{1-\gamma}$$

$$u_S(c, l) = \frac{(c^\theta l)^{1-\theta}}{1-\gamma}$$

기혼가구와 독신가구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결정은 보유자산( $k_M, k$ ), 취업기회( $\epsilon_M, \epsilon$ ), 연령( $t$ )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취업기회는 [부록 3]의 [부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확률적으로 결정되며, 보유자산은 아래 식 (6)과 같이 결정된다. 각 가구의 의사결정은 생애소득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와 여가 수준은 각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각 시점에 이들 가구가 직면하는 제약조건은 식 (6)과 같이 결정된다. 매기 자본소득( $rk, rk_M$ )에서 소득세 납부액( $\tau_y rk, \tau_y rk_M$ )을 차감한 세후 자본소득과 세후 비자산소득을 재원으로 소비( $c, c_M$ )와 자산증식( $k' - k, k'_M - k_M$ )에 배분할 수 있다. 각 가구는 양의 저축은 가능하지만 부채를 질 수 없다는 매우 강한 신용제약( $k_M \geq 0, k \geq 0$ )에 직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begin{aligned} k'_M(k_M, \epsilon_M, t) + c_M(k_M, \epsilon_M, t) &= (1 + r(1 - \tau_y))k_M + y_M^d(k_M, \epsilon_M, t) \\ k'(k, \epsilon, t) + c(k, \epsilon, t) &= (1 + r(1 - \tau_y))k + y^d(k, \epsilon, t) \end{aligned} \quad (6)$$

$$k_M \geq 0, k \geq 0$$

비자산소득은 노동소득, 최저임금 적용여부, 복지급여(실업급여, EITC, 기초생보)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임금( $hw, hw_p, hw_s$ )과 근로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저소득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 $we$ )이 최저임금( $\min W$ )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begin{aligned} y_M^d &= hw \hat{p}_{Pq} (1 - \tau_y - \tau_{UI}) + hw \hat{s}_{Sq} (1 - \tau_y - \tau_{UI}) \\ &\quad + W_{PUI}(\epsilon, q) + W_{SUI}(\epsilon, q) \\ &\quad + W_{M,MLSS} \\ &\quad + EITC_M(hw \hat{p}_{Pq} + hw \hat{s}_{Sq}) \end{aligned} \quad (7)$$

$$y^d = hw \hat{h}_q (1 - \tau_y - \tau_{UI}) + W_{UI}(\epsilon, q) + W_{MLSS}$$

$$hw(hw_p, hw_s) = \max(we, \min W)$$

아래 식 (8)은 비자산소득,  $y^d(y_{MP}^d, y_{MS}^d)$ 의 결정방식을 보이고 있다. 취업기회가 부여되고( $\epsilon=1, 2$ ) 근로활동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eta'=1$ ) 가구의 비자산소득은 세후노동소득과 EITC의 합으로 결정된다. 만일 근로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지 아니면 기초생보급여를 수급할지를 결정한다. 가구의 보유자산이  $k_{MLSS}^{\max}$  미만인 경우 기초생보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보유자산 규모가 이를 상회할 경우 수급할 수 없다. 장기실업자,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었음에도 금기에 주어진 취업기회에 취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epsilon=2, \eta'=0$ ),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 각 개인은 실업급여와 기초생보 중 큰 규모의 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취업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epsilon=3, 4$ ),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보를 수급한다. 이 경우도 장기실업자( $\epsilon=4$ )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

- $\epsilon(\epsilon_M, \epsilon_S)=1$  or  $2, \eta' = 1,$

$$y^d = hw \hat{h}_q (1 - \tau_y - \tau_{UI}) + EITC(hw \hat{h}_q)$$

$$y_{MP}^d = hw_{MP} \hat{h}_{Pq} (1 - \tau_y - \tau_{UI}) + EITC(hw_{MP} \hat{h}_{Pq} + hw_{MS} \hat{h}_{Sq})$$

$$y_{MS}^d = hw_{MS}\hat{h}_{Pq}(1 - \tau_y - \tau_{UI}) + EITC(hw_{MS}\hat{h}_{Sq}) \cdot 1(\hat{h}_{Mq} = 0)$$

- $\epsilon(\epsilon_M, \epsilon_S)=1, \eta' = 0,$ 

$$y^d = \max(W_{UI}, W_{MLSS}) \quad \text{if } k < k_{MLSS}^{\max}$$

$$= W_{UI} \quad \text{if } k \geq k_{MLSS}^{\max}$$

$$y_{MP}^d(y_{MS}^d) = \max(W_{UI}, W_{MLSS}) \quad \text{if } k_M < k_{MLSS}^{\max}$$

$$= W_{UI} \quad \text{if } k_M \geq k_{MLSS}^{\max}$$
- $\epsilon(\epsilon_M, \epsilon_S)=2, \eta' = 0,$ 

$$y^d = W_{MLSS} \quad \text{if } k < k_{MLSS}^{\max}$$

$$= 0 \quad \text{if } k \geq k_{MLSS}^{\max} \quad (8)$$

$$y_{MP}^d(y_{MS}^d) = W_{MLSS} \quad \text{if } k_M < k_{MLSS}^{\max}$$

$$= 0 \quad \text{if } k_M \geq k_{MLSS}^{\max}$$
- $\epsilon(\epsilon_M, \epsilon_S)=3,$ 

$$y^d = \max(W_{UI}, W_{MLSS}) \quad \text{if } k < k_{MLSS}^{\max}$$

$$= W_{UI} \quad \text{if } k \geq k_{MLSS}^{\max}$$

$$y_{MP}^d(y_{MS}^d) = \max(W_{UI}, W_{MLSS}) \quad \text{if } k_M < k_{MLSS}^{\max}$$

$$= W_{UI} \quad \text{if } k_M \geq k_{MLSS}^{\max}$$
- $\epsilon(\epsilon_M, \epsilon_S)=4,$ 

$$y^d = W_{MLSS} \quad \text{if } k < k_{MLSS}^{\max}$$

$$= 0 \quad \text{if } k \geq k_{MLSS}^{\max}$$

$$y_{MP}^d(y_{MS}^d) = W_{MLSS} \quad \text{if } k_M < k_{MLSS}^{\max}$$

$$= 0 \quad \text{if } k_M \geq k_{MLSS}^{\max}$$

가계의 의사결정은 가치함수로 요약될 수 있다(식 9). 미혼가구는 개인의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여부와 노동시간( $\hat{h}_q$ )과 자산축

적( $k'$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기혼가구는 가구전체의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노동( $\hat{h}_{Pq}$ ,  $\hat{h}_{Sq}$ )과 가구 자산 축적( $k'_M$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근로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epsilon(\epsilon_M, \epsilon_S)=1, 2$ ) 이루어지며, 근로기회가 없을 때, 즉  $\epsilon(\epsilon_M, \epsilon_S)=3, 4$  경우 자산축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V(k, \epsilon, t) = \max_{k', \hat{h}_q} \left( u(k' - (1 - \tau_y - \tau_{UI})k + y^d), \hat{h}_q \right) + \beta E_{t+1} V(k', \epsilon', t+1) \quad (9)$$

$$V(k, \epsilon_P, \epsilon_S, t) = \max_{k'_M, \hat{h}_{Pq}, \hat{h}_{Sq}} \left( u(k'_M - (1 - \tau_y - \tau_{UI})k_M + y_{MP}^d + y_{SP}^d), \hat{h}_{Pq}, \hat{h}_{Sq} \right) + \beta E_{t+1} V(k'_M, \epsilon'_P, \epsilon'_S, t+1)$$

## 2. 기업

기업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생산기술 노동( $N$ ), 자본( $K$ )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생산기술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 가정하며(식 10), 임금률( $w$ )은 노동생산성과 동일하게 결정된다(식 11). 이자율( $r$ )은 최저임금의 존재로 인해 경쟁시장을 상정하는 모형에서 통상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상이하게 결정된다. 이자율은 총자본소득  $(r + \delta)K$ 이 생산물에서 최저임금제하에서 지급되는 노동비용( $wN_{\min}$ )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소득의 소득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Y = AK^{1-\alpha}N^\alpha \quad (10)$$

$$w = \alpha AK^{1-\alpha}N^{\alpha-1} \quad (11)$$

$$r = Y - wN_{\min} / K - \delta \quad (12)$$

$$\begin{aligned}
N = & \sum_k \sum_t \sum_{\epsilon=1 \text{ or } 2} \sum_q \phi(k, \epsilon, t) \cdot 1(\eta'(k, \epsilon, t) = 1) e \hat{h}_q \\
& + \sum_k \sum_t \sum_{\epsilon_P=1 \text{ or } 2} \sum_{\epsilon_S=1 \text{ or } 2} \sum_q \phi(k, \epsilon_P, \epsilon_S, t) \cdot (1(\eta'_P(k, \epsilon_P, \epsilon_S, t) = 1) e \hat{h}_{Pq} \\
& \quad \quad \quad + 1(\eta'_S(k, \epsilon_P, \epsilon_S, t) = 1) e \hat{h}_{Sq})
\end{aligned} \tag{13}$$

$$\begin{aligned}
N_{\min} = & \sum_k \sum_t \sum_{\epsilon=1 \text{ or } 2} \sum_q \phi(k, \epsilon, t) \cdot 1(\eta'(k, \epsilon, t) = 1) h w \hat{h}_q \\
& + \sum_k \sum_t \sum_{\epsilon_P=1 \text{ or } 2} \sum_{\epsilon_S=1 \text{ or } 2} \sum_q \phi(k, \epsilon_P, \epsilon_S, t) \cdot (1(\eta'_P(k, \epsilon_P, \epsilon_S, t) = 1) h w \hat{h}_{Pq} \\
& \quad \quad \quad + 1(\eta'_S(k, \epsilon_P, \epsilon_S, t) = 1) h w \hat{h}_{Sq})
\end{aligned}$$

$$\begin{aligned}
K = & \sum_k \sum_t \sum_{\epsilon} \phi(k, \epsilon, t) k \\
& + \sum_{k_M} \sum_t \sum_{\epsilon_P} \sum_{\epsilon_S} \phi(k_M, \epsilon_P, \epsilon_S, t) k_M
\end{aligned} \tag{14}$$

### 3. 정부

정부는 실업보험제도, 기초생보, EITC제도, 최저임금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실업보험급여 지출액을 실업보험료로 충당하며(식 15) 기초생보와 EITC 지출액은 소득세로 충당한다고(식 16) 가정한다.

$$\begin{aligned}
\tau_{UI} w N_{\min} = & \sum_k \sum_t \sum_{\epsilon} \sum_q W_{UI}(k, \epsilon, t) \phi(k, \epsilon, t) \\
& + \sum_k \sum_t \sum_{\epsilon_P} \sum_{\epsilon_S} \sum_q (W_{MP, UI}(k_M, \epsilon_P, \epsilon_S, t) \\
& \quad \quad \quad + W_{MS, UI}(k_M, \epsilon_P, \epsilon_S, t)) \phi(k, \epsilon_P, \epsilon_S, t)
\end{aligned} \tag{15}$$

$$\begin{aligned}
\tau_y (w N_{\min} + r K) = & \sum_k \sum_{\epsilon} \sum_t \sum_q (W_{MLSS}(k, \epsilon, t) + EITC(k, \epsilon, t)) \phi(k, \epsilon, t) \\
& + \sum_k \sum_t \sum_{\epsilon_P} \sum_{\epsilon_S} \sum_q (W_{MLSS}(k_M, \epsilon_P, \epsilon_S, t) \\
& \quad \quad \quad + EITC(k_M, \epsilon_P, \epsilon_S, t)) \phi_M(k, \epsilon_P, \epsilon_S, t)
\end{aligned} \tag{16}$$



#### 4. 경쟁균형

본 모형에서 상정한 경제에는 완전경쟁 생산물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음에도 경쟁균형을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로 인한 고용의 감소의 결과를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으로 간주하지 않고 균형 실업률의 증가로 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업자의 구직률( $fp$ )의 감소를 초래하여 정상상태의 균형실업률( $u = \frac{sp}{sp + fp}$ )을 높이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본 모형의 경쟁균형은 소비자 최적화 문제의 회귀형(recursive form)으로 표현된다.  $\Omega = \{W_{UB}, W_{MLSS}, \min W, EITC(\cdot)\}$ 로 표현되는 정책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경쟁균형은 아래 조건 1~6을 만족시키는 가치함수  $V(k, \epsilon, t)$ ,  $V_M(k_M, \epsilon_P, \epsilon_S, t)$ , 의사결정함수  $c(k, \epsilon, t)$ ,  $k'(k, \epsilon, t)$ ,  $\eta'(k, \epsilon, t)$ ,  $\hat{h}_q(k, \epsilon, t)$ ,  $c_M(k_M, \epsilon_P, \epsilon_S, t)$ ,  $k_M'(k_M, \epsilon_P, \epsilon_S, t)$ ,  $\eta_P'(k_M, \epsilon_P, \epsilon_S, t)$ ,  $\eta_S'(k_M, \epsilon_P, \epsilon_S, t)$ ,  $\hat{h}_{Pq}'(k_M, \epsilon_P, \epsilon_S, t)$ ,  $\hat{h}_{Sq}'(k_M, \epsilon_P, \epsilon_S, t)$ , 구직률 결정함수  $fp(\min W)$ , 자산분포별 유형별 인구분포  $\phi(k, \epsilon, t)$ ,  $\phi_M(k_M, \epsilon_P, \epsilon_S, t)$ , 노동과 자본의 가격함수  $\{w, r\}$ 로 정의된다.

1. 개인의 의사결정과 집계변수의 변화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 (13)과 식 (14)가 만족된다.
2. 요소가격  $\{w, r\}$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식 (11)과 식 (12)가 만족된다.
3. 요소가격  $\{w, r\}$ , 정부의 정책변수  $\Omega$ , 구직률 결정함수  $fp(\min W)$ 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함수  $c(k, \epsilon, t)$ ,  $k'(k, \epsilon, t)$ ,  $\eta'(k, \epsilon, t)$ ,  $\hat{h}_q(k, \epsilon, t)$ ,  $c_M(k_M, \epsilon_P, \epsilon_S, t)$ ,  $k_M'(k_M, \epsilon_P, \epsilon_S, t)$ ,  $\eta_P'(k_M, \epsilon_P, \epsilon_S, t)$ ,  $\eta_S'(k_M, \epsilon_P, \epsilon_S, t)$ ,  $\hat{h}_{Pq}'(k_M, \epsilon_P, \epsilon_S, t)$ ,  $\hat{h}_{Sq}'(k_M, \epsilon_P, \epsilon_S, t)$ 는 가치함수 (식 9)와 예산제약식 (식 6)으로 표현되는 동태적 최적화 문제의 해이다.
4. 재화시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AK^{1-\alpha}N^\alpha = C + \delta K \quad (17)$$

5.  $k(k', \epsilon, t-1)$ 와  $k_M(k_M', \epsilon_P, \epsilon_S, t-1)$ 를 각각  $k'(k, \epsilon, t)$ 와  $k_M'(k_M, \epsilon_P, \epsilon_S, t)$ 들의 역함수로 정의하면, 연령별 인구분포  $\phi(k, \epsilon, t)$ 와  $\phi(k_M, \epsilon_P, \epsilon_S, t)$ 는 아래 식 (18)~(22)에 의해 결정된다.

$$\begin{aligned} \phi(k', 1q, t) &= (1-sp(t)) \sum_{\epsilon=1,2} \sum_{k(k', \epsilon, t-1)} \phi(k, \epsilon, t-1) \cdot 1(\eta'(k, \epsilon, t-1) = 1) \\ &\quad \cdot 1(\hat{h}(k, \epsilon, t-1) = \hat{h}_{1q}) \\ \phi(k', 1q, \epsilon_S t) &= (1-sp(t)) \sum_{\epsilon_P=1,2} \sum_{k(k', \epsilon_P, \epsilon_S, t-1)} \phi(k, 1q, \epsilon_S t-1) \cdot 1(\eta_P'(k, \epsilon_P, \epsilon_S, t-1) = 1) \\ &\quad \cdot 1(\hat{h}_P(k, \epsilon_P, \epsilon_S, t-1) = \hat{h}_{1q}) \end{aligned} \quad (18)$$

$$\begin{aligned} \phi(k', \epsilon_P 1qt) &= (1-sp(t)) \sum_{\epsilon_S=1,2} \sum_{k(k', \epsilon_P, \epsilon_S, t-1)} \phi(k, \epsilon_P 1q, t-1) \cdot 1(\eta_S'(k, \epsilon_P, \epsilon_S, t-1) = 1) \\ &\quad \cdot 1(\hat{h}_S(k, \epsilon_P, \epsilon_S, t-1) = \hat{h}_{1q}) \end{aligned}$$

$$\begin{aligned} \phi(k', 2, t) &= fp(t) \sum_{\epsilon=1,2} \sum_{k(k', \epsilon, t-1)} \phi(k, \epsilon, t-1) \cdot 1(\eta'(k, \epsilon, t-1) = 0) \\ &\quad + fp(t) \sum_{\epsilon=3,4} \sum_{k(k', \epsilon, t-1)} \phi(k, \epsilon, t-1) \end{aligned}$$

$$\begin{aligned} \phi(k_M', 2, \epsilon_S t) &= fp(t) \sum_{\epsilon_P=1,2} \sum_{k_M(k_M', \epsilon_P, \epsilon_S, t-1)} \phi(k, \epsilon_P \epsilon_S t-1) \cdot 1(\eta_P'(k, \epsilon_P \epsilon_S t-1) = 0) \\ &\quad + fp(t) \sum_{\epsilon_P=3,4} \sum_{k_M(k_M', \epsilon_P \epsilon_S t-1)} \phi(k, \epsilon_P \epsilon_S t-1) \end{aligned} \quad (19)$$

$$\begin{aligned} \phi(k_M', \epsilon_P 2, t) &= fp(t) \sum_{\epsilon_S=1,2} \sum_{k_M(k_M', \epsilon_P, \epsilon_S, t-1)} \phi(k, \epsilon_P \epsilon_S t-1) \cdot 1(\eta_S'(k, \epsilon_P \epsilon_S t-1) = 0) \\ &\quad + fp(t) \sum_{\epsilon_S=3,4} \sum_{k_M(k_M', \epsilon_P, \epsilon_S, t-1)} \phi(k, \epsilon_P \epsilon_S t-1) \end{aligned}$$

$$\begin{aligned} \phi(k', 3q, t) &= sp(t) \sum_{\epsilon=1,2} \sum_{k(k', \epsilon, t-1)} \phi(k, \epsilon, t-1) \cdot 1(\eta'(k, \epsilon, t-1) = 1) \\ &\quad \cdot 1(\hat{h}(k, \epsilon, t-1) = \hat{h}_{3q}) \end{aligned}$$



여기서  $popP$ ,  $popS$ ,  $pop_0$ 는 각 연령기의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 독신가구자 수를 의미한다.

6. 실업보험, 기초생보, EITC 제도의 예산계약식을 만족한다: 즉, 식 (15), (16)을 만족시킨다.

###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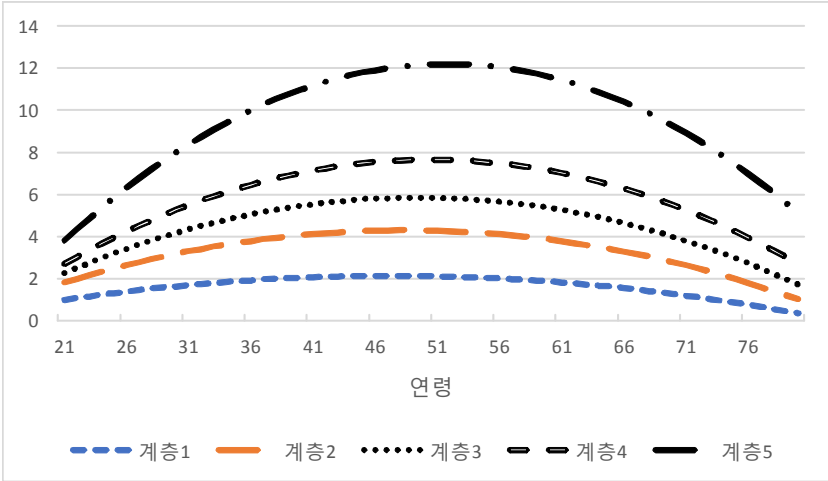
#### 1. 모형 캘리브레이션

본 모형에서 설정한 소득계층분류는 다음과 같다. 인구의 20%씩 5개 소득계층을 설정하고 계층1을 최고소득계층, 계층 5를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정의한다. 미혼가구와 기혼가구의 구성은 김동겸(2017)을 참조하여 각각 30%, 70%로 가정하였다.<sup>15)</sup> 소득계층별·연령별 임금률( $e_{ij}$ ,  $i$ :연령,  $j$ : 소득계층)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에 보고되어 있는 ‘학력별·연령별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계층별 교육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최종학력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률을 연령의 2차함수로 추정하였으며, 소득계층별·학력별 구성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연령별 임금률을 산출하였다(그림 3-1 참조).

소득계층별·연령별 이직률( $sp_j(i)$ )과 구직률( $fp_j(i)$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정하였다. 먼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구직률을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소득계층별 구직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소득계층별 고용안정성의 차이는 이직률의 차이로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최종학력별 이직률은 「국가통계포털(KOSTAT)」에 보고되어 있는

15) 김동겸(2017: 20)은 통계청 보도자료(2017. 4. 13)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을 인용하여 독신가구 비중이 2015년 현재 27.2%이며 이 비중은 2035년이 되면 34.6%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추계를 고려하여 독신자 가구 비중을 30%로 가정하였다.

[그림 3-1] 소득계층별·연령별 임금률



자료: 저자 계산.

학력별 실업률과 아래 식 (2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최종학력 구성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연령별 이직률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이직률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하였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취업률 혹은 고용률은 외생적으로 가정한 구직률과 이직률에 영향을 받지만 각 경제주체들의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전체 인구의 연령별 고용률이 실적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직률을 조정하였다(표 3-1,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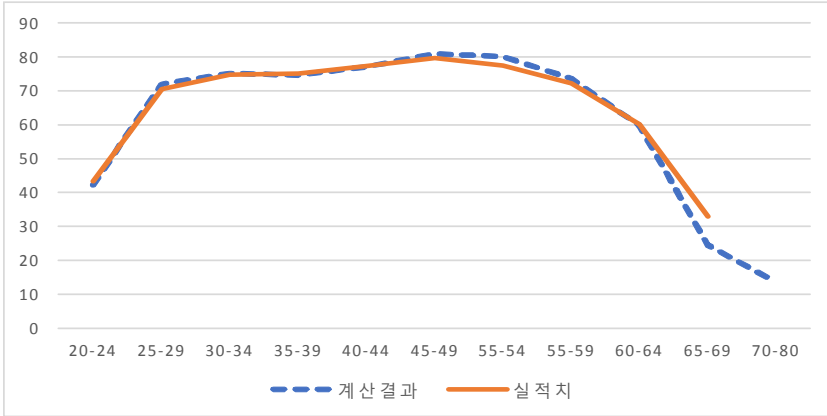
〈표 3-1〉 소득계층별·연령별 구직률 및 이직률

(단위: %)

		연령집단	21~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이직률 ( $Sp_j(i)$ )	계층 1		15.1	19.3	22.6	18.4	19.8	11.2	14.8	15.6	21.6	36.0
	계층 2		14.6	18.5	20.7	17.3	18.5	11.2	13.7	15.6	21.6	36.0
	계층 3		14.0	18.1	19.7	17.3	18.5	11.2	13.7	15.6	21.6	36.0
	계층 4		14.0	18.1	18.7	16.3	17.2	10.2	12.5	14.0	19.4	32.4
	계층 5		13.5	17.6	16.7	15.3	15.8	10.2	12.5	14.0	19.4	32.4
구직률 ( $fp_j(i)$ )	계층 1~5		30.9	51.3	60.8	69.8	73.7	60.4	48.2	54.0	44.9	44.9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국가통계포털(KOSTAT)」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2) (전체 인구의) 연령집단별 고용률



자료: 저자계산 및 「국가통계포털(KOSTAT)」.

본 모형은 구직률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구직률과 최저임금수준 간의 관계는 먼저 고용률과 최저임금 간의 관계에 대한 Lee and Park(2019)의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상정하였다. 이들의 실증분석은 고용률의 탄력성의 임금갭 탄력성( $\epsilon_E, W_{gap}$ )이  $-0.3 \sim -0.5$ 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임금갭은 최저임금수준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정도를 생산성 대비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식 24). 이들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식 (24)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률 변화를 계산하였으며, 다음으로 식 (23)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구직률 변화 폭을 산출하였다.

$$\text{실업률} = \text{이직률} / (\text{이직률} + \text{구직률}) \tag{23}$$

$$\Delta \text{고용률} / \text{고용률} = \epsilon_E, W_{gap} \times W_{gap} \tag{24}$$

$$W_{gap} = (\text{최저임금} - \text{시간당 임금}) / \text{시간당 임금}$$

선호관련 모수 중 할인율( $\beta$ )과 상대위험회피 계수( $\gamma$ )는 각각 0.96과 4로 가정하였다. 소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모수( $\theta$ )는 표준적인 수준인 0.33으로 가정하였으며, 기혼 가정 내 주소득자의 여가의 강도( $\kappa$ )는 1/3로 가정하였다. 전일제 노동시간( $\widehat{h_{Full}}$ )은 0.45로 가정하였다.<sup>16)</sup> 시간제

노동시간( $\widehat{h}_{Part}$ )은 전일제 노동시간의 1/2이라고 가정하였다. 생산관련 모수인 노동소득분배율( $\alpha$ )과 감가상각률( $\delta$ )은 『국민계정』과 표학길·송새랑(201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0.6, 0.05로 가정하였다.

〈표 3-2〉 기초생보 및 EITC 관련 모수

(단위 : %)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 $\zeta$ )	30세 미만	12.3%
		30세 이상 50세 미만	28.8%
		50세 이상	32.8%
기초생보	소득요건 ( $W_{MLSS}^{max}$ )	미혼가구	20.0% <sup>1)</sup>
		기혼 가구	34.1% <sup>1)</sup>
	재산기준 ( $h_{MLSS}^{max}$ )	(소득 요건 - 노동소득)/이자율	
EITC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4.9% <sup>1)</sup>
		홀벌이 가구	8.5% <sup>1)</sup>
		맞벌이 가구	9.8% <sup>1)</sup>
	점증률 ( $rc_1$ )	단독가구	14.2%
		홀벌이 가구	22.2%
		맞벌이 가구	25.0%
	점감률 ( $rc_3$ )	단독가구	-21.3%
		홀벌이 가구	-22.2%
		맞벌이 가구	-20.8%
	점증률 적용 상한 소득 ( $yc_1$ )	단독가구	23.0% <sup>1)</sup>
		홀벌이 가구	38.3% <sup>1)</sup>
		맞벌이 가구	39.2% <sup>1)</sup>
평탄구간 상한 소득 ( $yc_2$ )	단독가구	42.2% <sup>1)</sup>	
	홀벌이 가구	59.4% <sup>1)</sup>	
	맞벌이 가구	70.2% <sup>1)</sup>	
EITC 적용 상한 소득 ( $yc_3$ )	단독가구	65.2% <sup>1)</sup>	
	홀벌이 가구	97.7% <sup>1)</sup>	
	맞벌이 가구	117.3% <sup>1)</sup>	

주: 1)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현행 제도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16) 『고용노동통계』에 의하면 2015년 현재 근로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42.3시간 이고 취침시간, 식사시간 (각각 주 53.8시간, 21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총 가용시간을 93시간으로 가정하면 총 가용시간 대비 노동시간 비율이 약 45.5%가 된다. 주당 취침시간은 한국인의 평균 취침시간이 하루 7시간 41분이라는 Statistica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가정하였다.

정부정책 중 최저임금제는 평균임금의 70%로 가정하였다. 2018년 현재 월평균소득이 약 225.8만 원<sup>17)</sup>인 사실과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제 목표가 1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다. 실업보험급여의 임금대체율은 21세부터 30세의 경우 12.3%, 31세부터 50세의 경우 28.8%, 50세 초과인 경우 32.8%로 가정하였다. 실업급여 수준은 취업 시의 50% 정도이며, 최대 지급 기간이 각 연령대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각각 180일, 210일, 240일이며, 본 모형의 기간의 길이가 1년인 점을 감안하여 가정하였다. 기초생보관련 제도는 기혼가구의 경우 2인 가구, 독신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기초생보제도를 반영하였다. EITC의 경우는 독신가구, 맞벌이 부부 및 홑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반영하였다.

## 2. 자원배분계산 알고리즘

모형의 균형 값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구하였다.

- 1) 먼저 아래와 같은 정책변수를 선택한다.

$$\Omega = \{W_{UB}, W_{MLSS}, \min W, EITC(\cdot)\}$$

- 2) 다음으로  $K, N, \tau_{UB}, \tau_y$ 에 대한 초기치를 선택한다.
- 3) 2)에서의 초기치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부합하는 임금률( $w$ ), 이자율( $r$ )을 산출한다(식 (11), (12) 참조).
- 4) 다음으로 후방귀납법(backwards induction)을 이용하여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함수를 구한다(식 (9) 참조).
- 5) 식 (18)~(22)를 이용하여 인구분포를 산출한다.
- 6) 3)~5)에서 산출한 생산요소가격, 의사결정함수, 인구분포를 이용하여, 정부 예산제약식(식 (15), (16))과 집계변수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함수 간의 일관성 조건(식 (13), (14))을 만족시키는  $K, N, \tau_{UB}, \tau_y$ 를 산출한다.

17)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19), 「2018년 임금동향 및 2019년 임금전망」, 『고용·노동브리프』 제89호 참조.



7) 새로이 산출된  $K, N, \tau_{UP}, \tau_y$ 와 초기치를 비교하여 이들 수치가 수렴할 때까지 3)단계로 돌아가서 3)~6) 과정을 반복한다.

특히 단계 4)에서는 생애의 가장 마지막 기간부터 경제주체들의 노동공급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함수를 계산하며, 이때 각 개인의 보유자산을 하한선인 0에서 소득계층별로 설정한 상한선 사이를 220개의 눈금(grid)으로 나누어 잔여생애동안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보유자산수준을 선택하는 눈금탐색법(grid search)을 이용하였다.

## 제4절 결과분석

### 1. 기준경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기준경제는 현행의 실업보험, 기초생보를 상정하였다. 모형에서 산출된 자본/GDP 비율은 3.6으로, 대부분의 표준적인 국가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표 3-3 참조). 실업급여와 기초생보 지출액은 실제 지출액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실업급여와 기초생보 지출액은 각각 GDP의 3.3%, 1.8%로 최근 연도의 실적치(0.3%, 0.7%)보다 높은 수치인데, 본 연구에서 실업급여의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반영하지 않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년층에 대한 기초생보급여가 과대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저축률은 30.9%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2018년 실적치(27.9%)보다 다소 높으나 근접하는 수준이다. <표 3-3>에 보고되어 있는 고용률은 21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이다. 기혼가구와 미혼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고용률은 71.3%인데 2018년 1분기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연령별 고용률이 실적치와

〈표 3-3〉 거시경제 변수(기준경제)

		기준경제
Capital/GDP		3.6
민간저축률(%)		30.9
실업급여 <sup>1)</sup>		3.3
기초생보 <sup>1)</sup>		1.8
EITC <sup>1)</sup>		0.0
실업보험료(%)		5.5
소득세율(%)		2.2
고용률(%) <sup>2)</sup>	전 체	71.3
		59.8
		11.5
	기혼가구	71.8
	전일제	63.0
	시간제	8.8
	기혼가구(남성)	73.2
	전일제	73.2
	시간제	0.0
	기혼가구(여성)	70.3
	전일제	52.7
	시간제	17.6
미혼가구		68.9
	전일제	45.0
	시간제	23.9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0.348 <sup>2)</sup> (0.389) <sup>3)</sup>
		0.309 (0.308)
	소비	0.539 (0.498)
	자산	

주: 1) GDP 대비 비율(%).

2) 21~64세 인구 기준.

3) 21~80세 인구 기준.

자료: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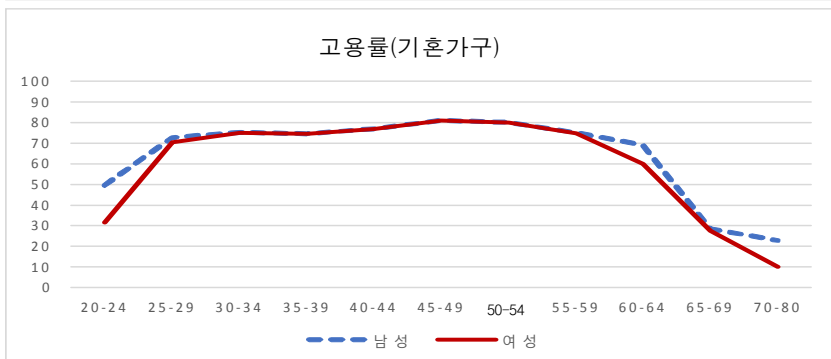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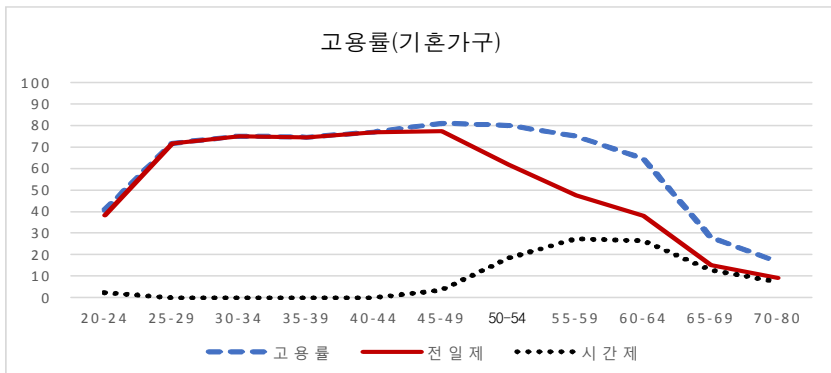
상당 수준 근접하고 있다(그림 3-2 참조). 기혼가구의 고용률은 71.8%이며 미혼가구는 이보다 조금 낮은 68.9%로 산출되었다. 기혼가구 내의 주 소득자(남성)의 고용률은 73.2%인 반면 보조소득자(여성)의 경우 70.3%로 산출되었다. 또한 취업형태의 경우도 남성과 여성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모든 취업이 전일제 형태로 이루어진 반면 여성

의 경우 상당 부분이 시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전일제는 52.7%, 시간제는 17.6%로 나타났다. 미혼가구의 경우도 시간제 취업이 23.9%로 전체 취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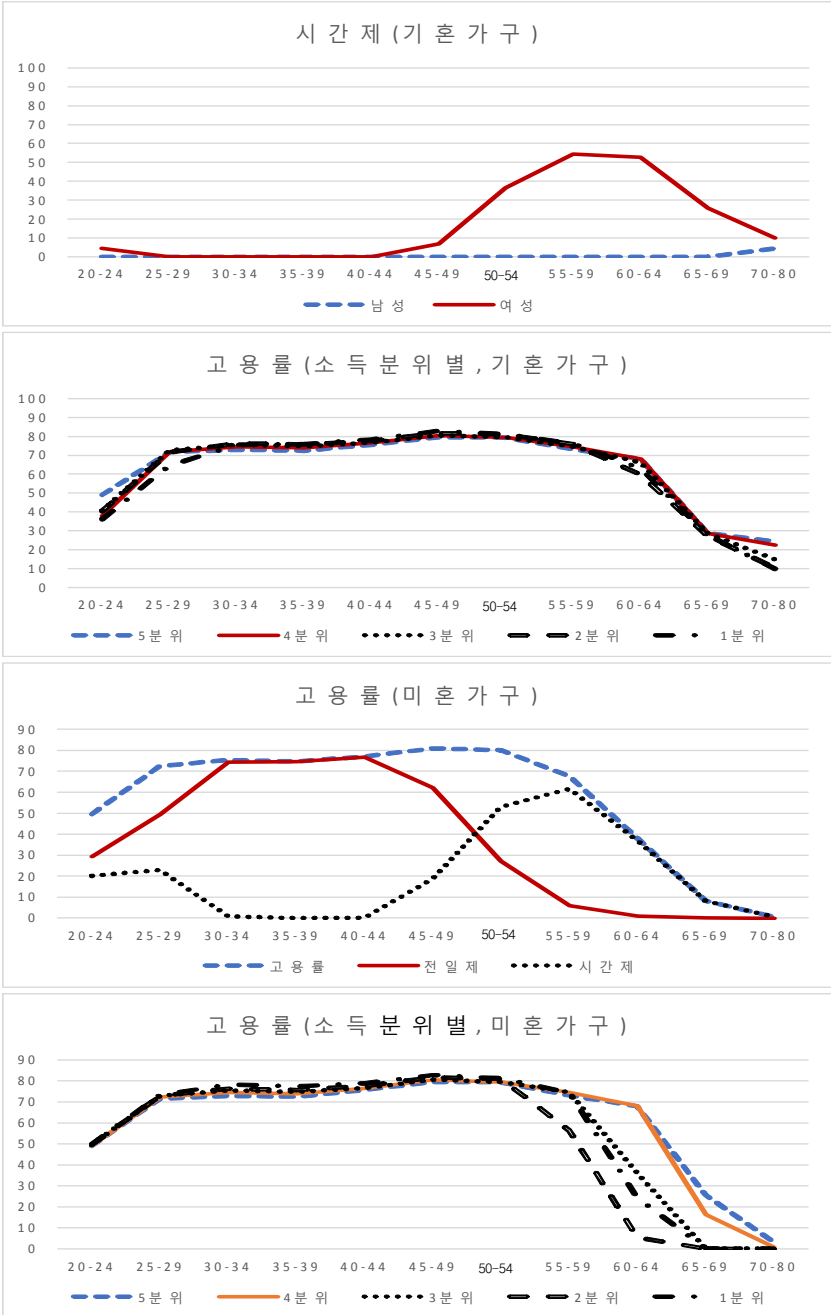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생산가능인구(전체인구)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0.348(0.389), 소비는 0.309(0.308), 자산의 경우 0.539(0.498)로 산출되었다. 생산가능인구(전체인구)를 대상으로 계산한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2017년도 실적치(0.355,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다소 낮게(높게) 산출되었다.

자원배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혼가구나 미혼가구 모두 청년기부터 중년기까지 고용률이 상승하다가 노년층으로 접어들면서 고용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3-3 참조). 취업형태를 보면 청년기 동안은 전일제가 지배적인 형태이나 은퇴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연령대에 가까워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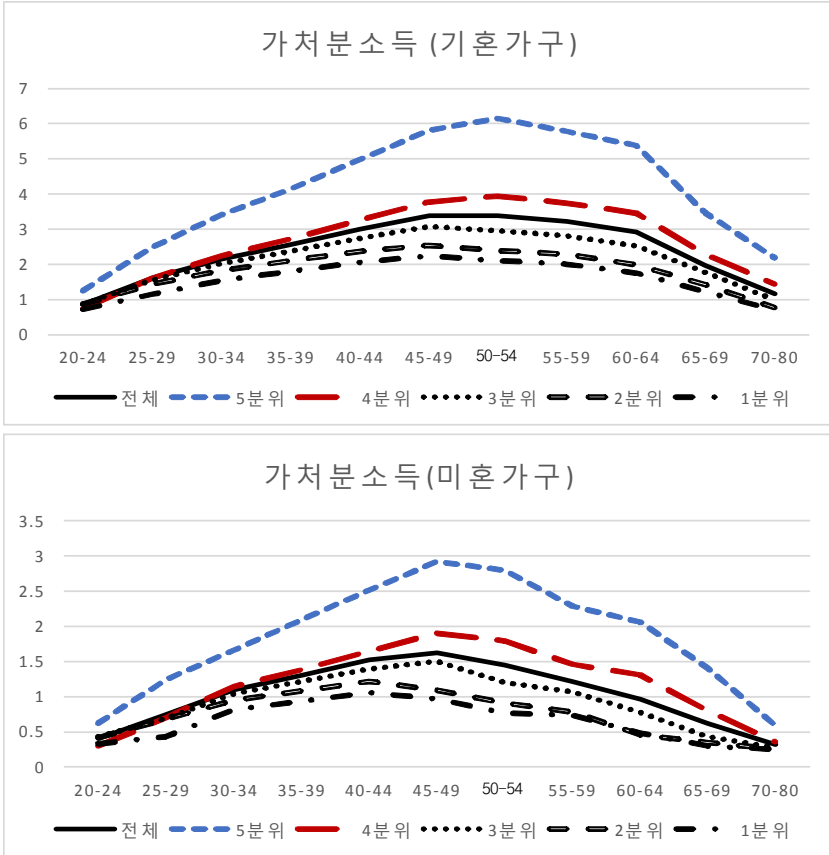
(그림 3-3) 연령별·소득계층별 자원배분(기준경제)



[그림 3-3]의 계속



[그림 3-3]의 계속



자료: 저자 계산.

수록 시간제 취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 패턴은 기혼가구 내 주소득자(남성)와 보조소득자(여성) 간 차이가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 노동공급의 상당 부분을 시간제 근로로 하는 반면 주소득자인 남성의 경우 전적으로 전일제 근무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기혼가구의 경우 전소득계층에 걸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혼가구의 경우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조기은퇴의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치분소득에서 소득계층별로 절대적인 차이가 나타날 뿐 아니라 연령별 패턴에도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치분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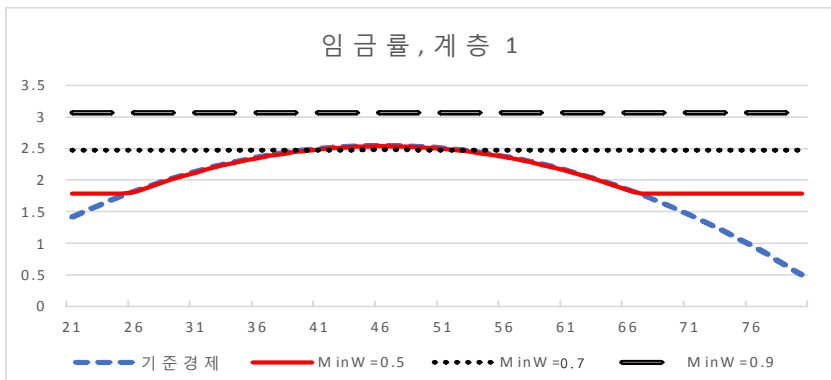
## 2. 최저임금의 효과

본 절에서는 최저임금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당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도입되는 상황(기본 가정, MinW=0.7)과 이와 더불어 50%, 60%, 80%, 90% 수준으로 도입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MinW=0.5, 0.6, 0.8, 0.9).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구직률이 하락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갭(Wgap)의 증가에 따른 고용률의 탄력성( $\epsilon_{E, Wgap}$ )이 -0.3~-0.5라는 Lee and Park(2019)의 실증분석을 반영하여 기본 가정하에서 고용탄력성을 -0.4(Coff\_adj=0.4)로 가정하고 탄력성이 이보다 낮은 -0.1부터 -1.0(Coff\_adj=0.1~1.0) 사이 수준을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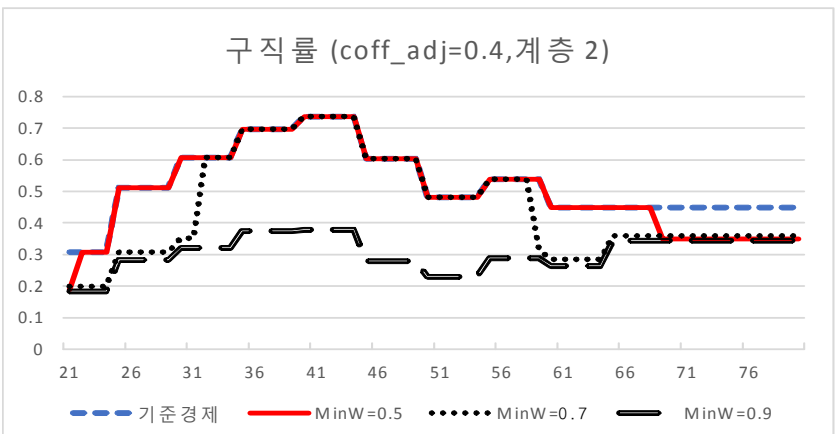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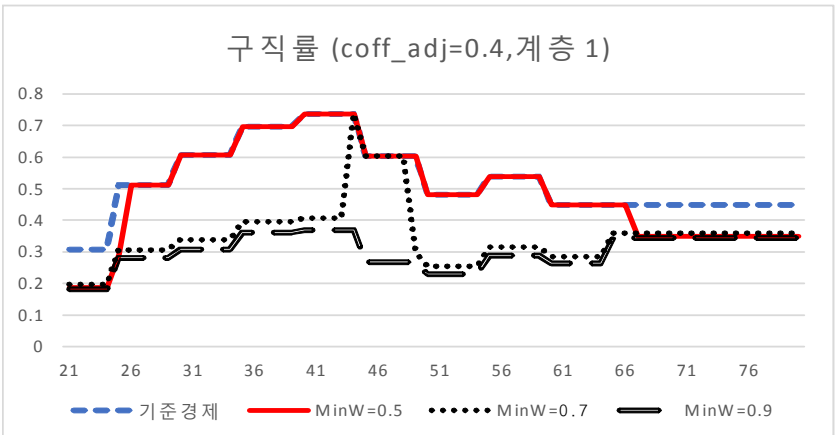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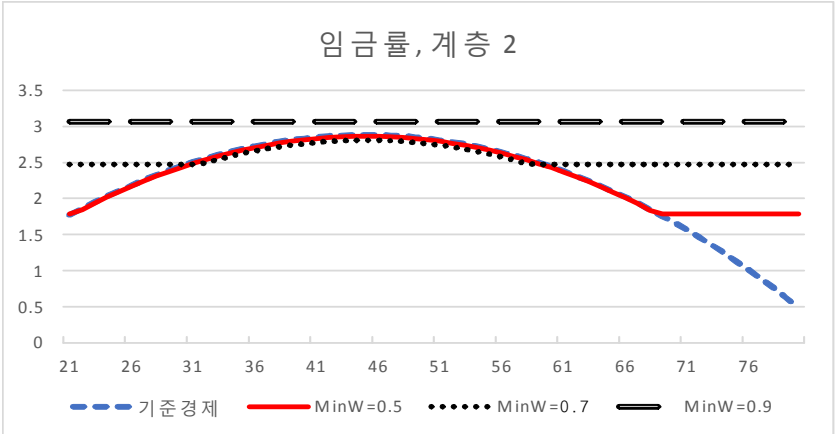
최저임금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 최고 소득계층인 계층5의 경우도 일부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용되는 연령집단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여타 소득계층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들 연령집단의 시간당 임금률이 상승하며 구직률은 낮아진다. 특히 하위계층인 계층 1과 2의 경우 넓은 범위의 연령집단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하위계층인 계층 1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을 경우 거의 모든 계층이 최저임금에 적용되며 또한 구직률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최저임금제에 의한 임금률 및 구직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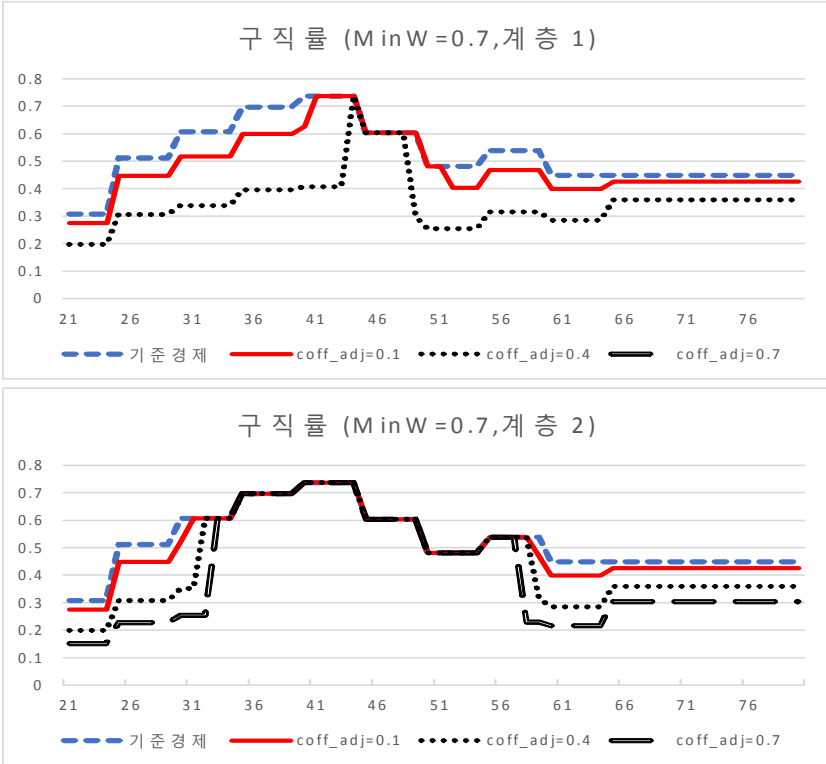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4]의 계속



(그림 3-4)의 계속



자료: 저자 계산.

최저임금의 도입과 이에 따른 구직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산출한 경제와 기준경제의 자원배분을 비교한 결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의 설정은 거시경제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기본가정인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70%, 고용탄력성  $-0.4$ ( $MinW=0.7$ ,  $Coff\_adj=0.4$ )를 상정할 경우 GDP가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적의 감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자본/GDP 비율도 3.6에서 3.5로 낮아졌다. 자본축적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식 (12)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의 자본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감소도 큰 폭으로 나타난다. 전체 고용률이 71.3%에서 69.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감소는 기혼가구(71.8%  $\rightarrow$  70.0%)보다 미혼가구(68.9%  $\rightarrow$  64.9%)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기혼가구 내에서의 주소득자(남성, 73.2%→70.2%)가 보조소득자(여성, 70.3%→69.8%)보다 더 큰 폭의 고용률 감소를 보였다. 취업의 형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률의 감소는 복지급여 지출액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승폭보다 기초생보급여 지출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장기실업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기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보다는 장기실업자에게도 지급되는 기초생보급여 지급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기초생보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의 인상이 유발되는데 그 인상폭이 매우 커서 자산축적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소폭 상승(0.348→0.352)하여 최저임금의 도입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70%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용탄력성을 높이면 거시경제변수의 악화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표 3-4 참조). 고용탄력성을  $-1.0$ (Coff\_adj=1.0)으로 가정하면 GDP는 약 10% 감소하고, 고용률은 64.0%로 감소하며, 기초생보 급여지출은 GDP의 4.5%로 증가하고 소득세율도 5.4%로 상승한다. 실업급여 지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고용감소가 주로 장기실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단기실업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분배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0.352에서 0.375로 상승하였다.

고용탄력성을  $-0.4$ 로 고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90%로 상향조정할 경우 GDP 감소 규모는 10%를 상회하고, 고용률은 65.1%로 감소하며, 실업급여와 기초생보 급여지출은 각각 GDP의 4.1%, 3.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취업기회가 줄어들지만 임금의 상승이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표 3-4〉 최저임금의 효과 1

	기준	임금갭에 대한 고용률 탄력성(coff_adj)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apital/GDP	3.6	3.5	3.5	3.5	3.5	3.5	3.5	3.5	3.4	3.4	3.4	
GDP 변화(%)	-	-1.5	-2.3	-3.1	-4.0	-4.9	-5.9	-7.0	-7.9	-8.9	-9.9	
민간저축률	30.9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6	30.7	
실업급여 <sup>1)</sup>	3.3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기초생보 <sup>1)</sup>	1.8	1.7	1.9	2.2	2.4	2.7	3.0	3.3	3.7	4.0	4.5	
EITC <sup>1)</sup>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실업보험료(%)	5.5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소득세율(%)	2.2	2.1	2.4	2.6	2.9	3.3	3.6	4.0	4.4	4.9	5.4	
고용률(%) <sup>2)</sup>	전 체	71.3	71.4	70.6	69.8	69.1	68.3	67.4	66.7	65.8	64.8	64.0
		59.8	59.6	59.0	58.3	57.7	57.1	56.3	55.5	55.0	54.3	53.6
		11.5	11.8	11.6	11.5	11.4	11.2	11.1	11.2	10.8	10.5	10.3
	기혼가구	71.8	72.2	71.5	70.7	70.0	69.2	68.4	67.6	66.8	65.8	65.0
		전일제	63.0	62.9	62.3	61.7	61.1	60.5	59.8	59.2	58.7	58.0
		시간제	8.8	9.3	9.2	9.0	8.9	8.7	8.6	8.4	8.1	7.8
	기혼가구(남성)	73.2	72.5	71.7	70.9	70.2	69.4	68.5	67.7	66.9	66.0	65.1
		전일제	73.2	72.5	71.7	70.9	70.2	69.4	68.5	67.7	66.9	66.0
		시간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70.3	71.9	71.2	70.5	69.8	69.1	68.2	67.4	66.6	65.7	64.8
		전일제	52.7	53.2	52.8	52.4	52.0	51.7	51.1	50.6	50.4	49.6
		시간제	17.6	18.7	18.4	18.1	17.8	17.4	17.1	16.8	16.2	15.7
	미혼가구	68.9	67.5	66.5	65.6	64.9	63.9	63.0	62.4	61.2	60.2	59.5
		전일제	45.0	44.3	43.8	42.7	42.0	41.3	39.8	38.3	37.8	37.0
		시간제	23.9	23.2	22.7	22.9	23.0	22.7	23.2	24.1	23.5	23.2
	지니계수 <sup>2)</sup>	가처분소득	0.348	0.340	0.344	0.348	0.352	0.356	0.361	0.365	0.369	0.372
		소비	0.309	0.297	0.300	0.304	0.308	0.311	0.316	0.320	0.323	0.326
		자산	0.539	0.521	0.526	0.532	0.538	0.543	0.550	0.556	0.559	0.562

주: 1) GDP 대비 비율(%).

2) 21~64세 인구 기준.

자료: 저자 계산.

〈표 3-5〉 최저임금의 효과 2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MinW)					
			0.5	0.6	0.7	0.8	0.9	
Capital/GDP		3.6	3.6	3.6	3.5	3.4	3.2	
GDP 변화(%)		-	-0.9	-1.9	-4.0	-7.5	-10.3	
민간저축률		30.9	30.9	30.7	30.5	30.1	30.1	
실업급여 <sup>1)</sup>		3.3	3.4	3.5	3.7	4.0	4.1	
기초생보 <sup>1)</sup>		1.8	2.1	2.2	2.4	2.8	3.1	
EITC <sup>1)</sup>		0.0	0.0	0.0	0.0	0.0	0.0	
실업보험료(%)		5.5	5.6	5.7	6.0	6.2	6.0	
소득세율(%)		2.2	2.6	2.7	2.9	3.4	3.7	
고용률 <sup>2)</sup>	전체	71.3	70.6	70.3	69.1	66.3	65.1	
		59.8	59.2	58.9	57.7	57.2	56.4	
		11.5	11.4	11.4	11.4	9.1	8.7	
	기혼가구	71.8	71.2	71.0	70.0	67.8	65.1	
		전일제	63.0	62.5	62.3	61.1	60.3	59.5
		시간제	8.8	8.7	8.8	8.9	7.6	5.6
	기혼가구(남성)	73.2	72.6	71.7	70.2	67.9	65.1	
		전일제	73.2	72.6	71.7	70.2	67.9	65.1
		시간제	0.0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70.3	69.8	70.4	69.8	67.8	65.1	
		전일제	52.7	52.3	52.9	52.0	52.7	53.8
		시간제	17.6	17.4	17.5	17.8	15.1	11.3
	미혼가구	68.9	68.0	67.0	64.9	59.3	65.0	
		전일제	45.0	44.3	43.1	42.0	42.9	42.3
		시간제	23.9	23.8	23.9	23.0	16.3	22.7
	지니계수 <sup>2)</sup>	가처분소득	0.348	0.351	0.351	0.352	0.352	0.351
		소비	0.309	0.310	0.310	0.308	0.303	0.294
		자산	0.539	0.540	0.541	0.538	0.535	0.535

주: 1)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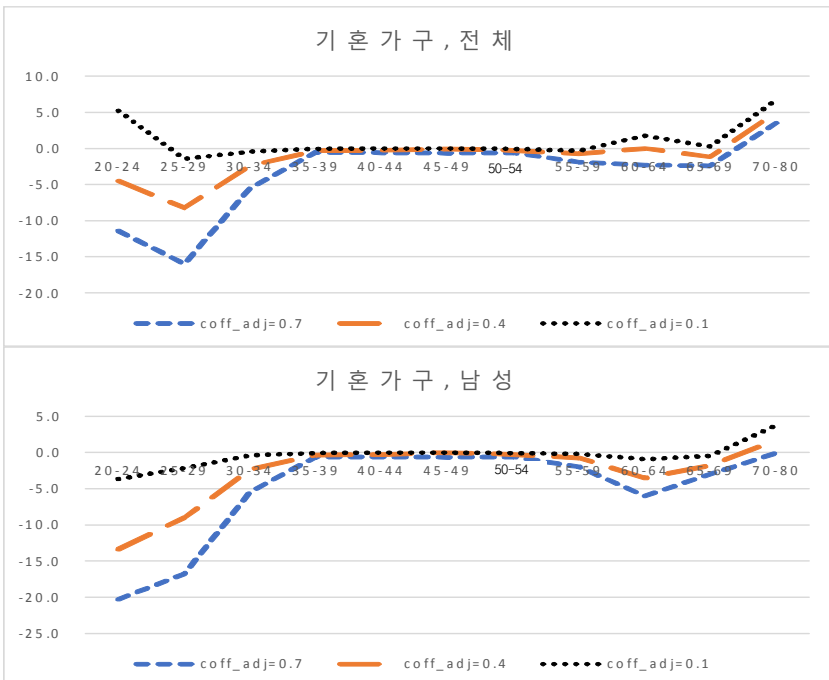
2) 21~64세 인구 기준.

자료: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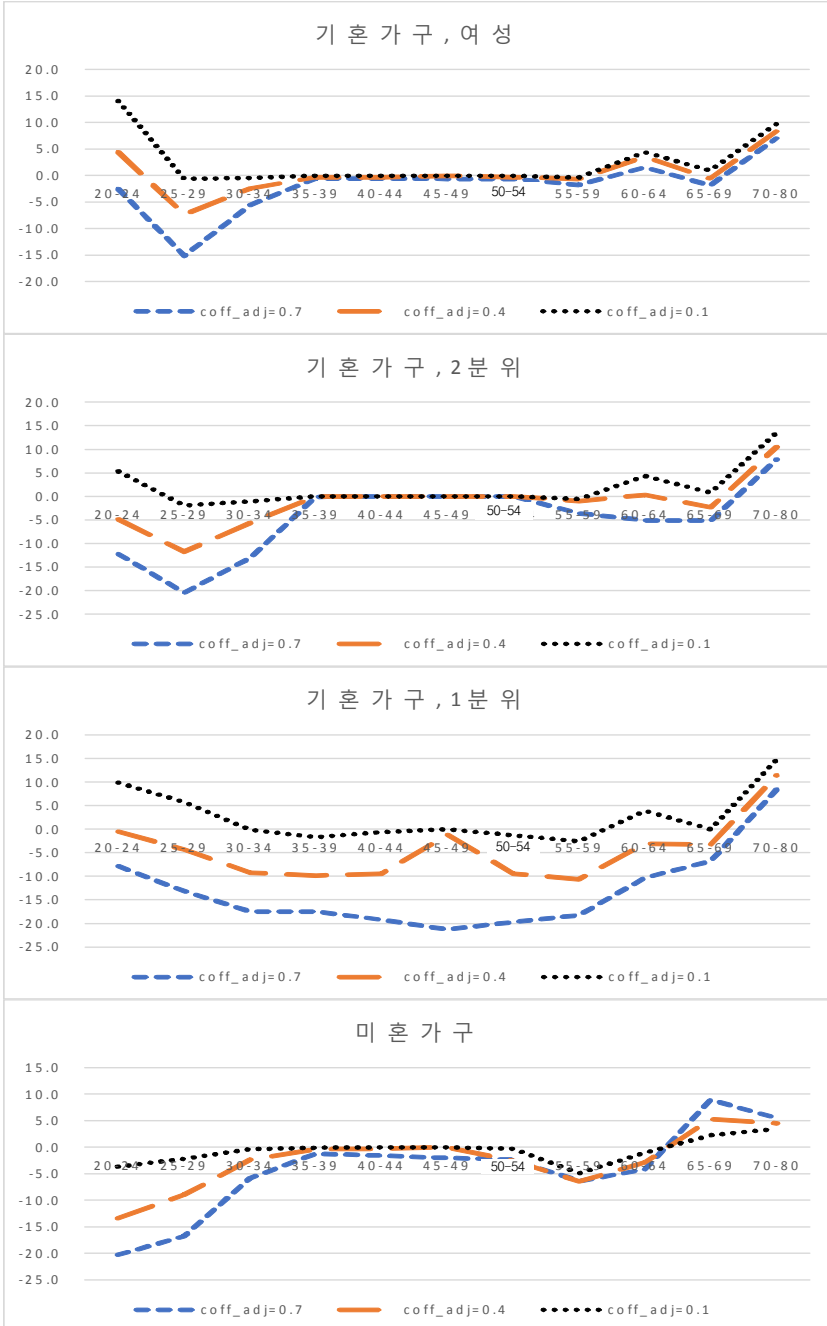
최저임금의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용률이 하락하는 주요 연령층은 20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그림 3-6). 최저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연령층의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시간당 임금이 증가할 경우 이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일부 연령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는 취업의사 증가 효과보다는 (구직률 하락으로 표현되는) 노동수요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가구의 여성과 저소득계층인 1, 2분위의 경우 고용률이 증가하는 연령대의 범위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넓고 고용률이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폭이 여타 소득계층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높아지거나 최저임금수준이 대폭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계층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최저임금제의 효과 1(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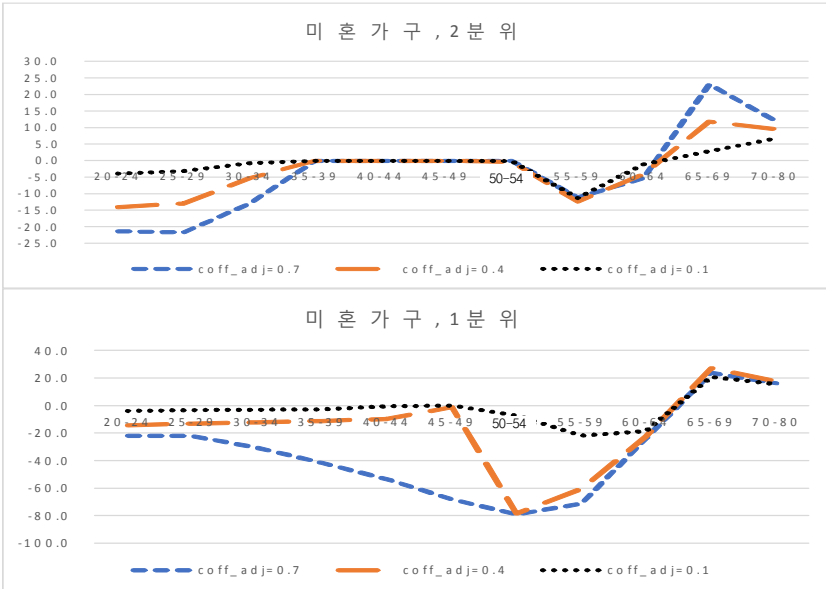
(단위: %p)



(그림 3-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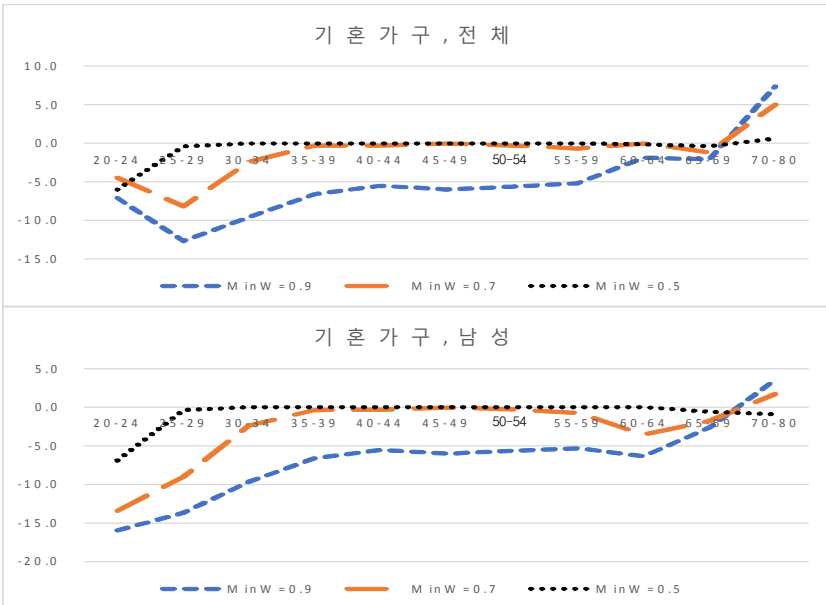
(그림 3-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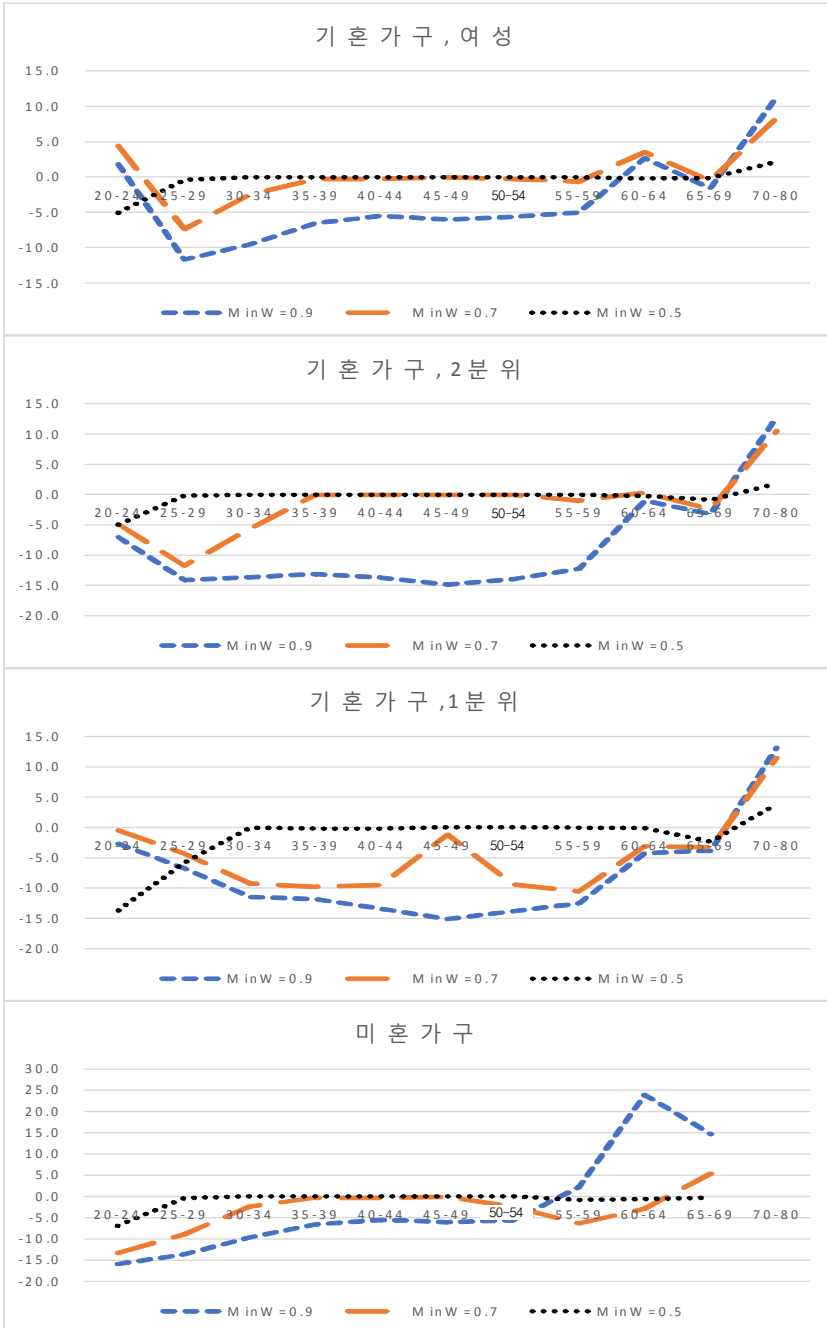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그림 3-6) 최저임금제의 효과 2(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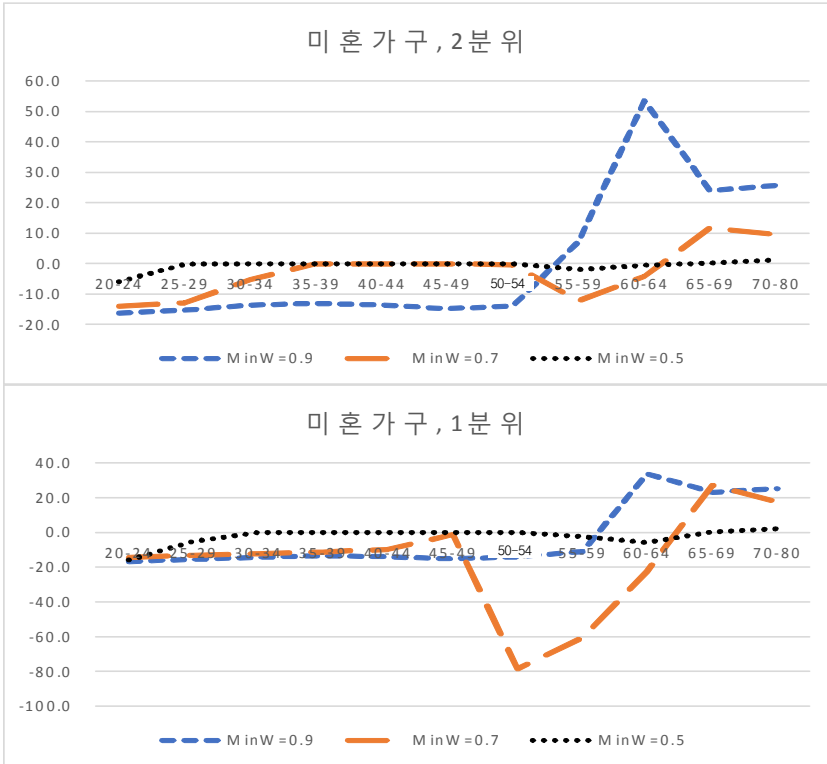
(단위: %p)



(그림 3-6)의 계속



[그림 3-6]의 계속



자료: 저자 계산.

### 3. EITC의 효과

기준경제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최저임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GDP와 자본 수준에 큰 변화가 없으며 기초생보급여 지급액도 큰 변화가 없다. 기초생보급여 지급액은 소폭 감소하였다.

고용률도 소폭 증가하는데, 이는 시간제 고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전일제 고용은 소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EITC로 인하여 고용률은 증가하되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은 감소가 유발되는 표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50대 연령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혼가구와 미혼가구의 20대의 경우 전일제 취업이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표 3-6〉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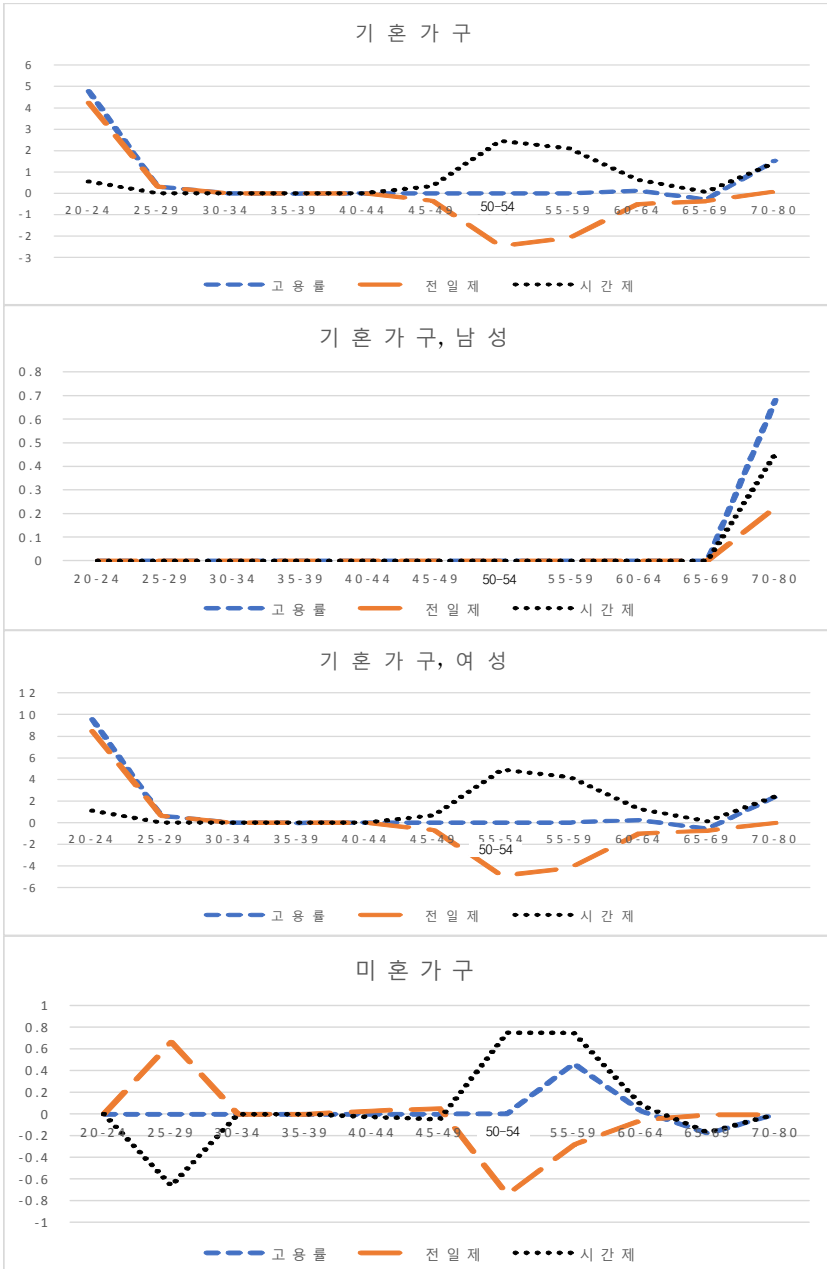
		기준경제	EITC 도입	
Capital/GDP		3.6	3.6	
GDP 변동(%)		-	-0.2	
민간저축률(%)		30.9	30.9	
실업급여 <sup>1)</sup>		3.3	3.3	
기초생보 <sup>1)</sup>		1.8	1.7	
EITC <sup>1)</sup>		0.0	0.3	
실업보험료(%)		5.5	5.5	
소득세율(%)		2.2	2.4	
고용률(%)	전 체	71.3	71.7	
		59.8	59.6	
		11.5	12.0	
	기혼가구	71.8	72.3	
		전일제	63.0	62.8
		시간제	8.8	9.5
	기혼가구(남성)	73.2	73.2	
		전일제	73.2	73.2
		시간제	0.0	0.0
	기혼가구(여성)	70.3	71.3	
		전일제	52.7	52.3
		시간제	17.6	18.9
	미혼가구	68.9	68.9	
		전일제	45.0	44.9
		시간제	23.9	24.0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0.348	0.347	
	소비	0.308	0.307	
	자산	0.498	0.497	

주: 1) GDP 대비 비율(%).

자료: 저자 계산.

(그림 3-7) EITC의 효과(고용률 변화)

(단위: %p)



자료: 저자 계산.

#### 4.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작용

EITC의 효과가 최저임금 수준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Neumark and Wascher(2011)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경제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네 가지 경제를 상정하였다: 경제 1(최저임금제 부재, EITC 부재); 경제 2(최저임금제 도입, EITC 부재); 경제 3(최저임금제 부재, EITC 도입); 경제 4(최저임금제 도입, EITC 도입). 최저임금이 EITC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다.

$$Y = [x(\text{경제 4}) - x(\text{경제 1})] - [x(\text{경제 2}) - x(\text{경제 1})] - [x(\text{경제 3}) - x(\text{경제 1})]$$

여기서  $x(*)$ 는 ‘경제 \*’에서의 자원배분을 의미한다.  $x(\text{경제 4}) - x(\text{경제 1})$ 은 최저임금제와 EITC가 동시에 도입되었을 때  $x$ 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x(\text{경제 2}) - x(\text{경제 1})$ 은 최저임금제 도입의 효과이다. 따라서  $[x(\text{경제 4}) - x(\text{경제 1})] - [x(\text{경제 2}) - x(\text{경제 1})]$ 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상태에서 EITC가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한다.  $[x(\text{경제 3}) - x(\text{경제 1})]$ 은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EITC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Y$ 는 최저임금제가 EITC 도입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지표  $Y$ 를 고용률의 변화로 정의하고 최저임금제와 EITC의 상호작용을 평가하였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최저임금제와 EITC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구를 세분화하였을 때 기혼가구 중 보조소득자(여성)의 경우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표 3-7, 표 3-8 참조). Neumark and Wascher(2011)에서와 같이 기혼여성이 새로이 취업하는 현상이 관찰되나, 기존의 전일제 취업이 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eumark and Wascher(2011)에 의하면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정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EITC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로참여를 위한 고정비용이 높아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들로 하여금 취

〈표 3-7〉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1(고용률 변화)

(단위: %p)

coff_adj=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전 체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3	-0.4	-0.4	-0.4	-0.4	-0.4	-0.5	-0.5	-0.6	-0.6
	0.0	0.0	0.0	0.0	0.0	0.0	0.1	0.1	0.1	0.2
기혼가구	-0.4	-0.4	-0.4	-0.5	-0.5	-0.5	-0.5	-0.5	-0.5	-0.5
	-0.4	-0.4	-0.4	-0.5	-0.5	-0.5	-0.6	-0.6	-0.7	-0.7
	0.0	0.0	0.0	0.0	0.0	0.1	0.1	0.1	0.2	0.2
기혼가구(남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0.9	-0.9	-0.9	-0.9	-0.9	-0.9	-0.9	-0.9	-1.0	-0.9
	-0.8	-0.8	-0.9	-0.9	-1.0	-1.1	-1.2	-1.2	-1.4	-1.4
	-0.1	-0.1	0.0	0.0	0.1	0.2	0.2	0.3	0.4	0.5
미혼가구	0.0	0.0	0.0	0.0	-0.1	-0.1	-0.1	-0.1	-0.1	-0.1
	-0.1	-0.1	0.0	0.1	-0.1	0.0	0.0	0.0	0.0	-0.2
	0.0	0.1	0.0	-0.1	0.1	-0.1	0.0	-0.1	-0.1	0.1

자료: 저자 계산.

〈표 3-8〉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상호작용 2(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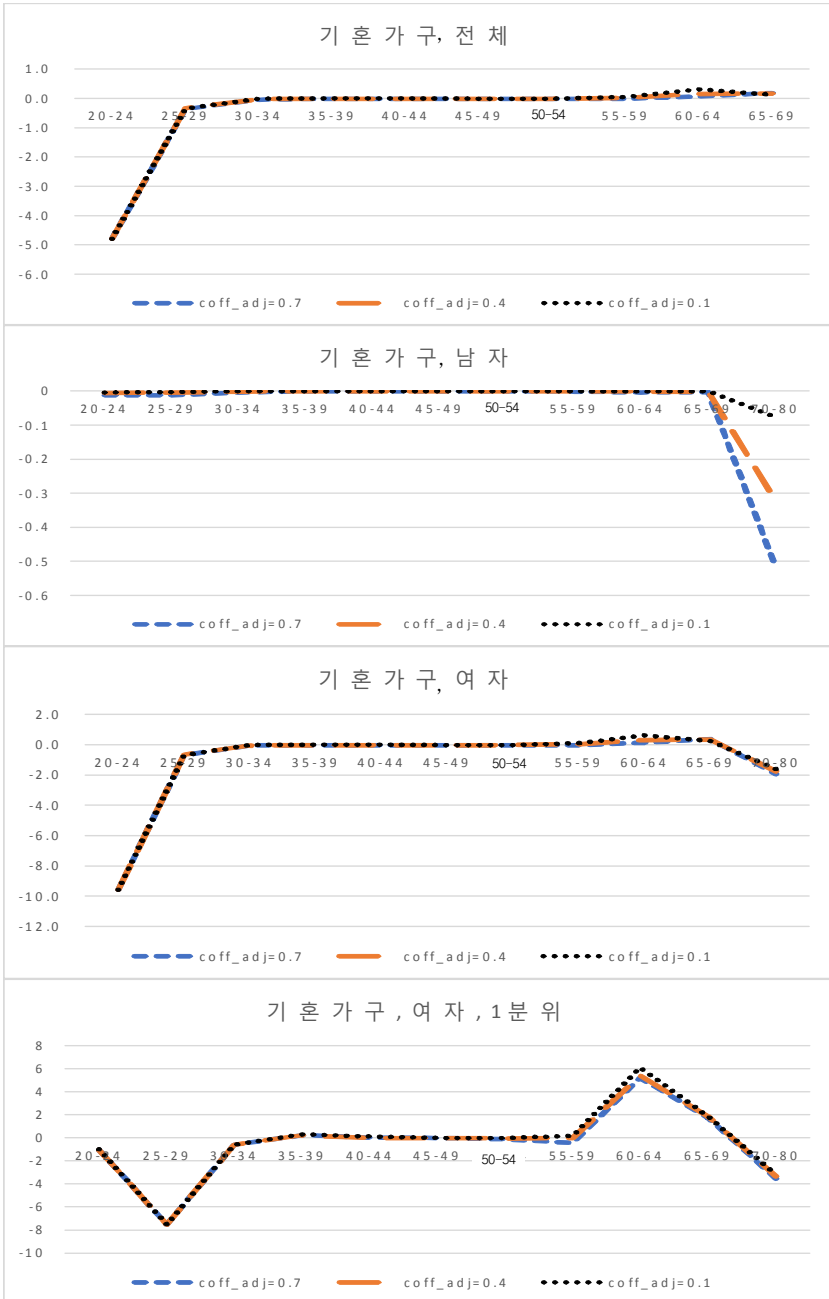
(단위: %p)

minW	0.5	0.6	0.7	0.8	0.9	
전체	0.0	-0.4	-0.4	-0.4	-0.4	
	0.0	-0.4	-0.4	-0.6	-0.4	
	0.0	0.0	0.0	0.1	0.0	
기혼가구	0.0	-0.5	-0.5	-0.5	-0.5	
	전일제	0.0	-0.4	-0.5	-0.8	-0.3
	시간제	0.0	0.0	0.0	0.3	-0.1
기혼가구(남성)	0.0	0.0	0.0	0.0	0.0	
	전일제	0.0	0.0	0.0	0.0	0.0
	시간제	0.0	0.0	0.0	0.0	0.0
기혼가구(여성)	0.0	-0.9	-0.9	-1.0	-1.0	
	전일제	0.0	-0.9	-0.9	-1.5	-0.7
	시간제	0.0	-0.1	0.0	0.6	-0.3
미혼가구	0.0	0.0	0.0	-0.1	0.0	
	전일제	0.2	-0.1	0.1	0.4	-0.5
	시간제	-0.2	0.1	-0.1	-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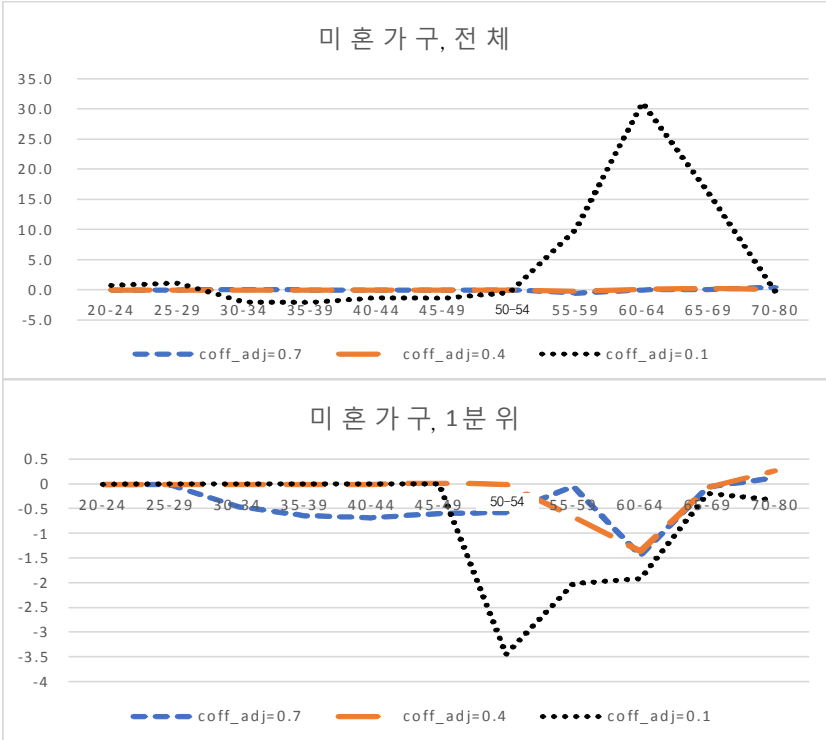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그림 3-8] EITC와 최저임금제의 상호작용 1(고용률 변화)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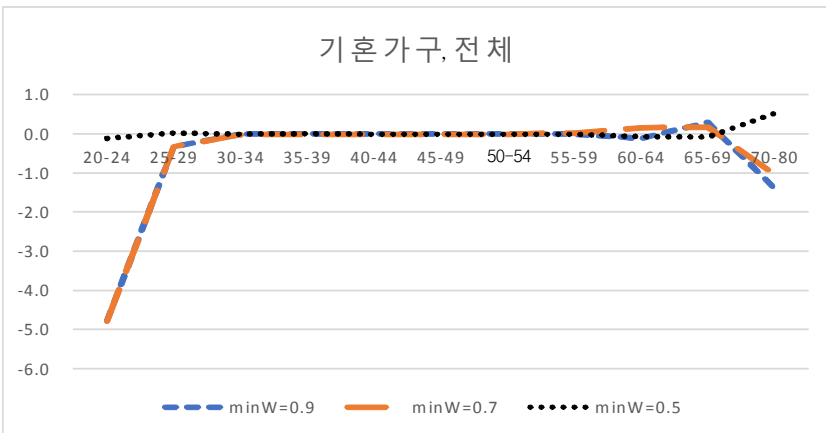
(그림 3-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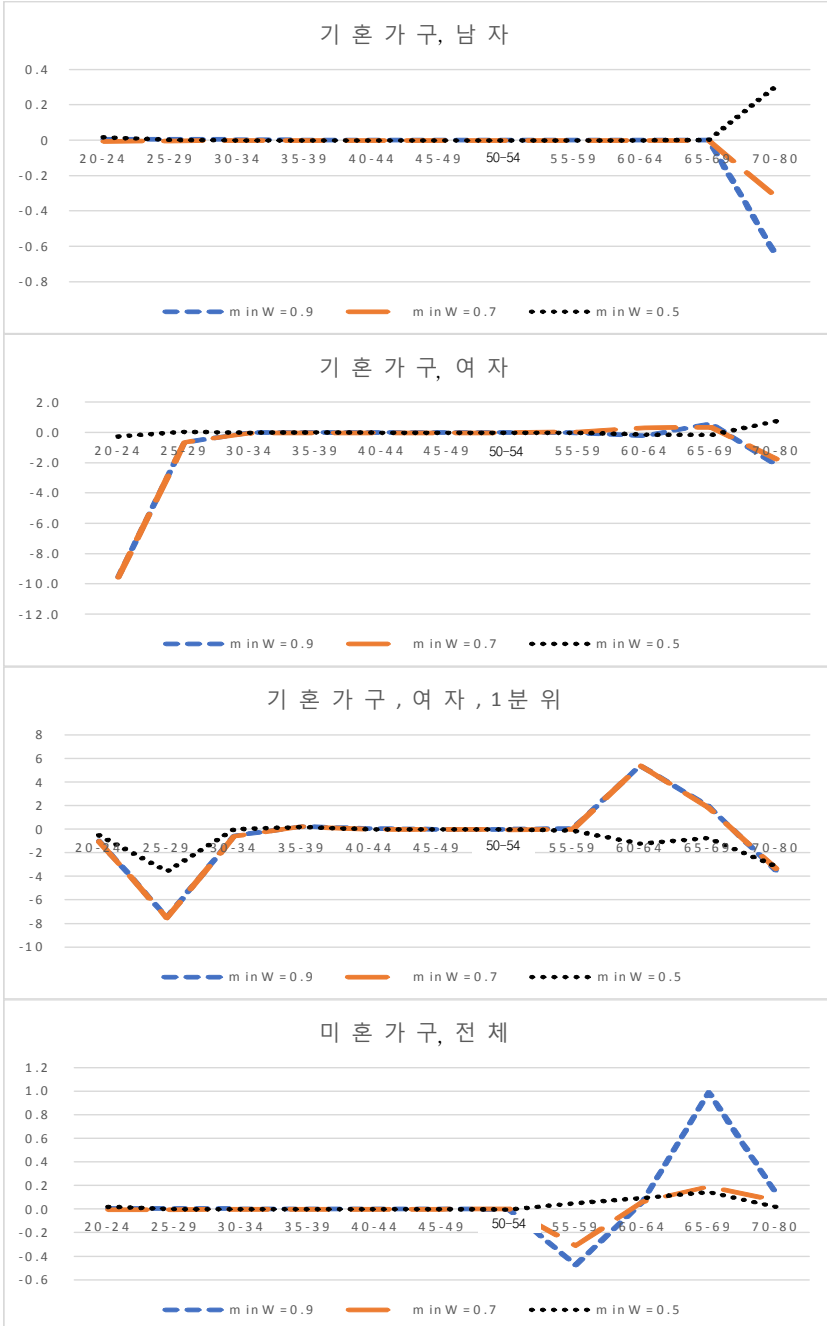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그림 3-9) EITC와 최저임금제의 상호작용 2(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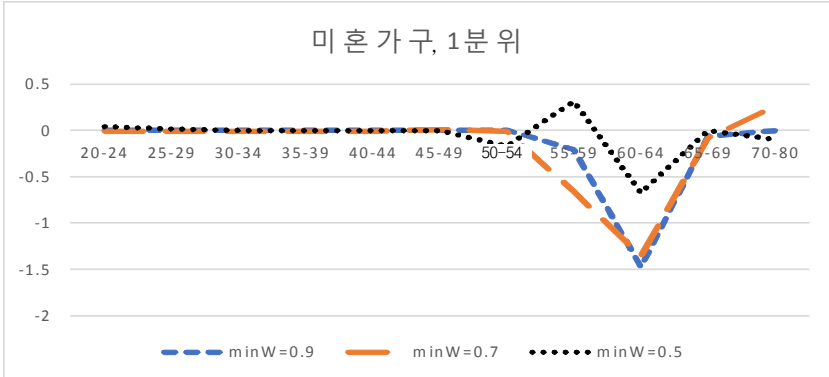
(단위: %p)



[그림 3-9]의 계속



(그림 3-9)의 계속



자료: 저자 계산.

업의사를 증가시키고 또한 EITC로 인한 비숙련 노동공급의 증가로 인한 이들의 시간당 임금 하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근로참여를 위한 고정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여가에 대한 선호의 강도의 차이를 통해서 이 고정비용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혼가구의 여성의 경우 선호의 강도가 남성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어 근로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저임금제가 이들 인구집단에 대해 EITC의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보기 어렵다. EITC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효과는 다소 기대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전일제 취업이 감소하여 취업률 증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EITC 효과를 증진시키기보다 위축시킨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작용을 소득계층별·연령별로 살펴보면 그 효과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기혼가구 여성 중 60대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또한 최저임금제와 EITC제도의 주요 목표 집단인 최저소득계층(5분위)의 경우 두 제도의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가 일부 인구집단에 대해 EITC 효과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EITC의 효과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절 소 결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제, 근로장려세제(EITC) 개별 제도의 효과와 이 두 제도 간 상호작용, 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였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의 경제에 대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제도 수혜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유발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가 충분히 작을 경우는 노동공급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은 기초생보와 같은 복지급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저임금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대(60대) 여성 인력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여 증가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전일제 취업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줄일 뿐 아니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상호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라는 정책적 변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두 제도는 모두 빈곤을 퇴치하거나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대상은 개인과 가구로 상이하다. 특히 최저임금제의 경우 가구를 단위로 하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가구가 아닌 개인을 정책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상과 수단 간의 불일치라는 숙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빈곤 퇴치 효과에 대해 언급할 경우, 두 제도의 상대적 유효성에 주로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Neumark and Wascher(2011)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와 EITC에 초점을 두고 있다. EITC가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공급을 늘려 이들의 임금률의 하락을 유발하여 고용증대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러한 임금률의 하락을 방지하여 노동공급 증가의 상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참여와 관련된 고정비용이 높은 집단, 특히 부양자녀가 있는 편모가구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들의 높은 고정비용을 극복하고 노동공급을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이들은 제시하였다. 이 연구 이전에는 최저임금제와 EITC의 상호관련성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

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에, EITC는 노동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두 제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량적인 중요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 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와 전자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결합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한 정책 모의실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제2장의 분석에 해당하며, 후자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저임금의 수준과 인상률, 근로장려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실적, 그리고 양자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실적치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고 이를 가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유자녀 무배우(여성)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관련성에 대해 단서로 삼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결합 및 상호작용에 대해 국세청의 실적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경험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모자가구의 수와 비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의 결과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동공급에 있어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모자가구 여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의 하락을 인상된 최저임금이 막아준다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은 모자가구 여성이 예컨대 10대 청소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모자가구 여성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금액은 다른 가구들의 수급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는 모자가구 여성의 장려금 최저 수급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매우 더 크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모자가구 여성의 교육수준도 다른 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았으며, 연령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이 서로 결합하여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매우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모자가구의 수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모자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제3장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제도의 개별 제도의 효과와 이 두 제도 간의 상호작용, 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근로장려제도의 효과를 증진시키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상정할 경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제의 경제에 대한 충격은 무엇보다도 고용의 대폭적인 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제도 수혜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를 유발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의사가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노동에 대한 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비숙련 노동수요의 감소 규모가 충분히 작을 때에는 노동공급의 효과가 노동 감소를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연구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 탄력성 추정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하락은 기초생보와 같은 복지급여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

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비용의 증가는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져 자본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최저임금제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는 일부 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보다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경제에서 근로참여도가 낮은 특정 연령대 여성 인력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신규 노동시장 참여 증가의 효과가 다소 있으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전일제 취업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줄일 뿐 아니라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하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종합하면, 경험자료에 입각할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결합된 최저임금은 모자가구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가구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하였다. 아울러 모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이 다른 가구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아울러 모자가구 여성의 인적자본이 10대 청소년 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최근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장려세제의 대폭 확대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의 자료를 사용한 결과로서 해석에 있어 한계가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가능한 방법은 한국 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정책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모의실험 한 결과는 최저임금의 고용 저해 효과가 매우 커서 다른 일

부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과 같은 정책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사용하는 정책은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알려준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2018),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7.18.
- 김대일·이인재·전영준·박지순·이정민(2016), 『최저임금제 제도개선 방안』, 노동부 발주 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김동겸(2017),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9호, pp.20~23.
- 남재량(2017),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손희경(2017),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분석」, 『2017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Ⅱ권』, 제3장, 통계청.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의결경위』, 각 연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TAT)』.
- 표학길·송새량(2014), 「한국의 분기별 자본스톡과 잠재성장률 추계(1981~2012)」, 『한국경제의 분석』 20(3), pp.177~285.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2019), 「2018년 임금동향 및 2019년 임금전망」, 『고용·노동브리프』 제89호(2019-04).
- 한국노동연구원(2019), 『2019 KLI 노동통계』.
- \_\_\_\_\_, 「한국노동패널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Card, David and Alan Krueger(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pp.772~793



- Cho, J.-O. and R. Rogerson(1988), “Family Labor Supply and Aggregate Fluctuation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1, pp.233~245.
- Friedman, Milton(1962, 200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Jungmin and Geumbi Park(2019),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Business Closing : Evidence from Employer–Employee Matched Panel Data,” presented 2019 WEAI annual conference, San Francisco, June 28–July 2.
- Neumark, David and William Wascher(2011), “Does a Higher Minimum Wage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4 (4), pp.712~747.
- Neumark, David and William Wascher(2007),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Foundations and Trends in Microeconomics* 3 (1-2), pp.1~182.
- Stigler, George J.(1946), “The Economics of Minimum Wage Legis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Websites : Statistic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21957/time-spent-sleeping-countries/>)

## 〔부록 1〕 부 표

〈부표 2-1〉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단위: 원, %)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인상률
1998	1,485	6.1
1999	1,525	2.7
2000	1,600	4.9
2001	1,865	16.6
2002	2,100	12.6
2003	2,275	8.3
2004	2,510	10.3
2005	2,840	13.1
2006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2009	4,000	6.1
2010	4,110	2.8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의결경위», 각 연도; 한국노동연구원(2019), 『2019 KLI 노동통계』.

## 〈부표 2-2〉 부자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만 원, 가구, 천 가구)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구수 (가중치 적용)
2008	78.1	17	120	4	9,456
2009	87.2	80	110	2	3,885
2010	86.2	80	110	2	3,797
2011	129.4	115	150	3	2,987
2012	-	-	-	-	-
2013	94.5	70	140	3	6,748
2014	98.6	6	257	7	21,785
2015	120.0	30	270	11	28,494
2016	110.6	20	250	9	24,55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부표 2-3〉 부자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의 전체가구 수급금 대비 비율

(단위: %)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가구수 (가중치 미적용)	가구수 (가중치 적용)
2008	98.5	425.0	100.0	3.8	3.5
2009	104.1	4000.0	76.4	2.6	1.7
2010	91.5	1600.0	91.7	2.2	1.8
2011	154.5	1916.7	75.0	2.3	1.0
2012	-	-	-	-	-
2013	96.1	700.0	70.0	2.0	1.9
2014	100.3	300.0	82.9	2.0	2.4
2015	135.6	1500.0	84.4	2.8	2.5
2016	143.6	1000.0	78.1	2.0	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부록 2]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1. 2017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수급 요건	세부내용	비고
가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li> <li>-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li> <li>-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li> </ul>	*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총소득 요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일 것	*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요건은 삭제됨. (2014. 1. 1.)

자료: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일부개정]에서 발췌하여 정리.

## 2. 2018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수급 요건	세부내용	비고
가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있는 경우</li> <li>-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li> <li>- (단독가구) 신청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 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 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 양자녀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li> </ul>
총소득 요건	<p>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 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 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 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 거나 부 또는 모 각각 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일 것</li> <li>*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li> </ul>
재산 요건	<p>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 1억 원 이상시 지 급액 50% 감액</li> </ul>

자료: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에서 발췌하여 정리.

### 3. 2019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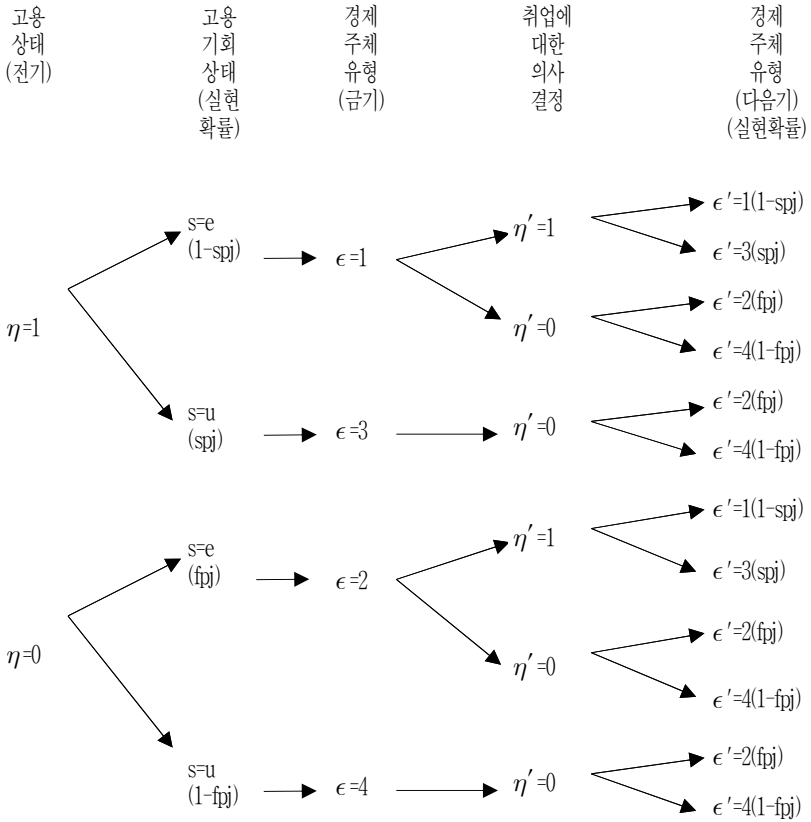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수급 요건	세부내용	비고
가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있는 경우</li> <li>-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li> <li>- (단독가구) 신청자가 30세 미만도 포함 장애인인 경우</li> </ul>	<p>*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 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 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 양자녀 범위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p>
총소득 요건	<p>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일 것</p>	<p>*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 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 거나 부 또는 모 각각 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일 것</p> <p>*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p>
재산 요건	<p>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p>	<p>* 재산 1.4억 이상시 지 급액 50% 감액</p>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에서 발췌하여 정리.

### [부록 3] 고용상태 결정과정

[부도 1] 고용상태 결정과정







◆ 執筆陣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영준(한양대학교 교수)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 2019년 12월 26일 인쇄  
2019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배 규 식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388-4